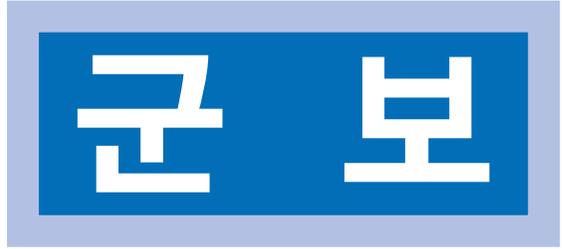




장수군
JANGSU COUNTY



군보는 공문으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선 람	기 관 의 장

정기 제386호 2017. 10. 16(월)

조 례

장수군 조례 제2239호	장수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	1
장수군 조례 제2240호	장수군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3
장수군 조례 제2241호	장수군 친환경농업 육성 조례 일부개정조례	11
장수군 조례 제2242호	장수군 온라인 쇼핑몰 운영에 관한 조례	14
장수군 조례 제2243호	장수군 장수승마장 관리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	24
장수군 조례 제2244호	장수군 소방취약계층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	33
장수군 조례 제2245호	장수군 농산물종합가공센터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	37
장수군 조례 제2246호	장수군 표고 톱밥배지 배양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53
장수군 조례 제2247호	장수군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	58
장수군 조례 제2248호	장수군청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	60

규 칙

장수군 규칙 제1104호	장수군 장수승마장 관리운영 조례 시행규칙 전부개정규칙	63
장수군 규칙 제1105호	장수군청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78

입 법 예 고

장수군 공고 제 2017 - 817호	장수군 문화예술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91
----------------------	-----------------------------------	----

고 시

장수군 고시 제 2017 - 105호	장수누리파크 조성사업 시행계획 변경 승인 고시	96
장수군 고시 제 2017 - 108호	장수 군계획시설(도로)사업 실시계획 인가 고시	107

공 고

장수군 공고 제 2017 - 797호	수분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보상계획 열람공고	110
장수군 공고 제 2017 - 798호	원홍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보상계획 열람공고	116
장수군 공고 제 2017 - 825호	산림보호구역 지정해제 예정지 공고	123

회 람									
--------	--	--	--	--	--	--	--	--	--

발행 장 수 군 (편집 기획조정실 ☎ 063-350-2228)

장수군 조례 제 2239호

장수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

장수군의회 의결을 거친 장수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17년 10월 19일

장 수 군 수

장수군 건축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제6호 중 “그 밖의 다른” 을 “다른” 으로 하고, 같은 항에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군수가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제24조제3항제12호 중 “흡연실” 을 “흡연실로서 연면적 50제곱미터 이하인 것” 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1. 개정이유

- 가. 상위법령과 현행 조례와의 혼선 방지 및 규제를 완화하는 차원에서 일부 개정하고
- 나. 현행 건축 조례 운영 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대상 중 군수가 건축위원회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추가 (제8조제1항제7호)
- 나. 가설건축물 축조신고 대상 중 야외흡연실에 대한 면적 규정을 개정함 (제24조제3항제12호)

장수군 조례 제 2240호

장수군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장수군의회 의결을 거친 장수군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17년 10월 19일

장 수 군 수

장수군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① 쓰레기 봉투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소각용 봉투 : 불에 타는 쓰레기를 담아 배출하며, 공공성 여부에 따라
일반용과 공공용으로 세분한다.
2. 매립용 봉투 : 불에 타지 않는 쓰레기를 담아 배출하며, 공공성 여부에
따라 일반용과 공공용으로 세분한다.
3. 음식물류 폐기물 봉투 : 음식물류 폐기물을 담아 배출한다.

② 쓰레기 봉투의 색깔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소각용 봉투 : 흰색(반투명)
2. 매립용 봉투 및 음식물류 폐기물 봉투 : 황색(투명)

별표 3, 별표 4 및 별표 7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3]

쓰레기 봉투의 용량 · 크기 및 두께(제15조 관련)

구분	용량(ℓ)	봉투규격 (높이×나비 cm)	호칭두께 (mm)	색상
음식물류 폐기물	2	35.5×19	0.025	황색(투명)
	3	39.5×22	0.025	
	5	46.5×26	0.030	
소각용, 매립용	3	39.5×22	0.025	소각용 : 흰색(반투명) 매립용 : 황색(투명)
	5	46.5×26	0.030	
	10	56.5×33	0.030	
	20	69.5×42	0.035	
	30	78.5×48	0.035	
	50	91.5×56	0.045	
	75	103.5×65	0.050	
	100	113.5×71	0.055	

※ 공공용은 30 ~ 100ℓ 용량으로 한다.

[별표 4]

쓰레기 봉투의 제작 사양(제16조제1항 관련)

이 선 위는 봉투를 묶는 부분입니다.	이 선 위는 봉투를 묶는 부분입니다.
<div data-bbox="451 709 537 819" data-label="Image"> </div> <p data-bbox="313 885 678 1036">소각용 종량제봉투(ℓ) (불에 타는 쓰레기) - 일 반 용 -</p> <ol data-bbox="249 1111 743 1426" style="list-style-type: none"> 1. 소각용 쓰레기만 담아 주세요. (육류 뼈, 도자기류, 깨진 유리, 조개껍데기 등 의 매립용, 음식물류, 재활용품은 제외) 2. 쓰레기는 반드시 이 봉투에 담아 묶은 후 배출 하셔야 수거합니다. 3. 이 봉투 외에 다른 봉투를 사용하여 쓰레기를 버릴 경우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 됩니다. <p data-bbox="409 1481 584 1518">장 수 군 수</p> <p data-bbox="308 1577 687 1690">연락처 : 환경위생과 지도미화팀장 (전화 : 350-0000) 제작업체 고유번호 또는 품질인증표시</p>	<div data-bbox="964 717 1050 827" data-label="Image"> </div> <p data-bbox="832 893 1197 1044">소각용 종량제봉투(ℓ) (불에 타는 쓰레기) - 공 공 용 -</p> <ol data-bbox="768 1105 1262 1379" style="list-style-type: none"> 1. 소각용 쓰레기만 담아 주세요. (육류 뼈, 도자기류, 깨진 유리, 조개껍데기 등 의 매립용, 음식물류, 재활용품은 제외) 2. 이 봉투는 가로 및 골목길의 쓰레기를 담는 등 공공목적용으로만 사용하여야 합니다. 3. 이 봉투는 군수가 지정한 사람만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 <p data-bbox="924 1490 1099 1526">장 수 군 수</p> <p data-bbox="823 1586 1202 1698">연락처 : 환경위생과 지도미화팀장 (전화 : 350-0000) 제작업체 고유번호 또는 품질인증표시</p>

<p>이 선 위는 봉투를 묶는 부분입니다.</p>	<p>이 선 위는 봉투를 묶는 부분입니다.</p>
<div style="text-align: center;">  <p>장수군</p> </div> <p style="text-align: center;">매립용 종량제봉투(ℓ) (불에 타지 않는 쓰레기) - 일 반 용 -</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매립용 쓰레기(육류 뼈, 도자기류, 깨진 유리, 조개껍데기 등)만을 분리하여 배출해 주세요. 2. 매립용 쓰레기는 지정된 일시와 장소에 배출하여 주세요. 3. 이 봉투 외에 다른 봉투를 사용하여 쓰레기를 버릴 경우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 됩니다. <p style="text-align: center;">장 수 군 수</p> <p>연락처 : 환경위생과 지도미화팀장 (전화 : 350-0000) 제작업체 고유번호 또는 품질인증표시</p>	<div style="text-align: center;">  <p>장수군</p> </div> <p style="text-align: center;">매립용 종량제봉투(ℓ) (불에 타는 않는 쓰레기) - 공 공 용 -</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매립용 쓰레기(육류 뼈, 도자기류, 깨진 유리, 조개껍데기 등)만을 분리하여 배출해 주세요. 2. 이 봉투는 가로 및 골목길의 쓰레기를 담은 등 공공목적용으로만 사용하여야 합니다. 3. 이 봉투는 군수가 지정한 사람만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 <p style="text-align: center;">장 수 군 수</p> <p>연락처 : 환경위생과 지도미화팀장 (전화 : 350-0000) 제작업체 고유번호 또는 품질인증표시</p>

이 선 위는 봉투를 묶는 부분입니다.



음식물류 종량제봉투(ℓ)

1. 이 봉투는 음식물쓰레기만을 넣어 배출하여야 합니다.
2. 음식물쓰레기는 물기를 최대한 제거 후 봉투에 넣어야 합니다.
3. 이 봉투 외에 다른 봉투를 사용하여 쓰레기를 버릴 경우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장 수 군 수

연락처 : 환경위생과 지도미화팀장
(전화 : 350-0000)
제작업체 고유번호 또는 품질인증표시

[별표 7]

쓰레기규격봉투 가격(제18조 관련)

구분		2ℓ	3ℓ	5ℓ	10ℓ	20ℓ	30ℓ	50ℓ	75ℓ	100ℓ
가 격	음식물류 폐기물	50원	70원	90원						
	소각용, 매립용			90원	180원	360원	540원	900원	1,350원	1,800원

1. 개정이유

본격적인 폐기물 소각시설 운영으로 쓰레기를 소각용과 비소각용으로 분류할 필요가 있고, 쓰레기 봉투의 종류와 배출 방법 등을 변경하여 청소 환경을 개선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쓰레기 봉투의 종류를 소각시설 및 매립장 운영에 맞게 변경

- 기존 : 일반용 봉투,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 봉투, 공공용 봉투
- 변경 : 소각용 봉투, 매립용 봉투, 음식물류 폐기물 봉투

(소각용 봉투와 매립용 봉투는 일반용과 공공용으로 세분)

나. 쓰레기 봉투의 용도를 배출쓰레기 소각 가능 여부에 맞게 변경

다. 쓰레기봉투의 색상을 분리작업 효율 제고와 생활습성에 맞게 변경

장수군 조례 제 2241호

장수군 친환경농업 육성 조례 일부개정조례

장수군의회 의결을 거친 장수군 친환경농업 육성 조례 일부개정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17년 10월 19일

장 수 군 수

장수군 친환경농업 육성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친환경농업육성법」 제3조” 를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 로 한다.

제2조 중 “「친환경농업육성법」 제2조” 를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로 한다.

제9조제1항 중 “서로 뽑는다” 를 “호선한다” 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전북지원진안·장수출장소장” 을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진안·장수사무소장수분소장” 으로 하며, 같은 항
제6호를 제7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친환경농업인연합회 대표

제12조제2항을 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② 위원회는 연 1회 이상 개최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1. 개정이유

장수군의 친환경농업의 발전·육성을 위하여 위원회 위원 구성원에 친환경농업경영인협회 대표를 신설하고, 위원회의 개최를 연 1회 이상으로 하여 침체되어 있는 친환경농업을 활성화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관계 법령 명칭 변경에 따른 법령 변경(제1조, 제2조)
- 나. 위원회의 구성의 “서로 뽑는다” 를 “호선한다” 로 변경(제9조제1항)
- 다. 위원회의 구성 대상기관 명칭변경(제9조제2항)
- 라. 위원회의 구성 대상에 친환경농업연합회 대표 신설(제9조제2항제6호)
- 마. 위원회는 연 1회 이상 개최한다는 사항 신설(제12조제2항)

장수군 조례 제 2242호

장수군 온라인 쇼핑몰 운영에 관한 조례

장수군의회 의결을 거친 장수군 온라인 쇼핑몰 운영에 관한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17년 10월 19일

장 수 군 수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수군 온라인 쇼핑몰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전자상거래를 통한 주민 소득증대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한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수몰"이란 장수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우수 농특산물 및 가공 상품의 홍보와 판매촉진을 위하여 군이 개설한 온라인 쇼핑몰을 말한다.
2. "입점업체"란 군에 사업장을 두고, 장수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의 입점 승인을 받아 장수몰에서 상품을 판매하는 개인·단체 또는 법인을 말한다.

3. "전자상거래"란 전자거래(「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전자거래를 말한다)의 방법으로 상행위를 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운영자 및 운영방법) ① 장수물은 군수가 비영리로 직접 운영하되, 장수물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장수물 운영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위탁에 관한 사항은 「장수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군수는 주문접수, 배송지시 및 판매대금의 정산을 담당하고, 입점업체는 상품등록, 상품포장 및 상품배송을 담당한다.

제4조(입점상품) 장수물에 입점신청이 가능한 상품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군에서 생산되는 농특산물
2. 군에서 생산되는 농특산물을 사용한 가공 상품[군에서 생산된 농특산물을 사용한 OEM(Original Equipment Manufacturing) 제품을 포함]

제5조(판매방법) 장수물에서 취급하는 상품은 전자상거래의 방법으로 판매하며, 장수물의 인터넷 주소는 “<http://www.장수물.com>”으로 한다.

제6조(입점절차) ① 장수물에 입점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군수에게 입점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입점신청서를 접수하면 현장 확인 등 입점심사를 거쳐 입점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참여확약서를 제출받아 입점을 승인한다.

제7조(입점의 탈퇴) ① 입점업체는 언제든지 군수에게 탈퇴를 요청할 수 있으며, 군수는 입점업체의 탈퇴 요청 시 즉시 탈퇴 처리한다. 다만, 모든 진행 중인 거래를 완료해야 탈퇴가 가능하며 탈퇴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불이익은 입점업체가 부담한다.

② 군수는 입점업체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입점업체 승인 또는 입점상품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1. 입점신청 내용에 허위사실이 있거나 기재하여야 할 사항을 고의로 누락한 경우
2. 위법 또는 부당한 신청임이 확인된 경우
3. 전자상거래 질서를 위협하는 경우
4. 매매 부적합 상품 등록 및 판매
5. 권리침해상품(특허권, 상표권, 저작권 침해 등) 등록 및 판매
6. 본 계약 이외의 목적으로 고객 정보를 임의 이용한 경우
7.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장수군의 명예를 실추시켰을 경우

③ 군수는 제2항에 따라 입점이 취소된 업체에 대해서 재입점을 제한할 수 있다.

제8조(장수물 운영 책무) ① 군수는 입점업체와 구매고객 간에 상품매매거래가 이루어질 수 있는 온라인상의 거래공간을 제공하며, 입점업체와 구매고객 간의 거래 행위와 관련된 책임은 상호 간에 있다.

② 입점업체는 쇼핑몰을 통해 상품을 판매하는 상품의 가격, 상품정보 등을 결정한다.

③ 입점업체는 상품의 등록, 포장 및 배송 등에 있어 장수물에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다만, 입점업체에게 고의 또는 과실이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9조(상품배송) 입점업체는 군수가 지정한 택배운송업체를 이용하여 상품을 배송하여야 한다. 다만, 장수물의 운영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입점업체가 택배운송업체를 지정하여 이용할 수 있다.

제10조(판매대금) ① 상품의 판매대금은 군수가 지정한 계좌에 입금 처리한다.

② 군수는 판매대금을 월 1회 정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입점업체와 협의하여 따로 정할 수 있다.

제11조(장수물 이용자의 권리·의무·책임) 장수물 이용자의 권리·의무 및 책임사항은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고시하는 「인터넷 사이버몰 이용표준약관」에 따른다.

제12조(홍보) 군수는 상품의 판매를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이벤트 등 홍보활동을 할 수 있다.

1. 포털사이트 이용 홍보 마케팅
2. 소셜 네트워크 이용 홍보 마케팅
3. 블로그를 활용한 홍보 마케팅
4. 팸투어를 이용한 홍보 마케팅
5. 그 밖에 장수물의 상품판매 촉진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홍보

제13조(비용의 지원) 군수는 장수몰과 오프라인 매장인 「장수군 로컬푸드 행복장터」를 활성화하고, 입점상품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하여 입점업체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1. 제12조의 홍보비
2. 상품 배송비
3. 상품 포장재 개발·제작비
4. 상품촬영 및 콘텐츠 제작비
5. 장수몰 입점업체 직거래 판촉행사 홍보비
6. 그 밖에 장수몰의 활성화를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용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서식]

장수물 입점신청서

1. 입점자 일반사항

업체명(농장명)		(개인 <input type="checkbox"/> 단체 또는 법인 <input type="checkbox"/>)		
신청자	성명		휴대폰 ☎	
	주소		이메일	
사업장	주소		휴대폰 ☎	
장수물 가입	아이디		비밀번호	
입점희망품목	(주요품목 기재)			
사업자등록 (해당자만 기재)	유 <input type="checkbox"/> 무 <input type="checkbox"/>		등록번호	
	업태		업종	
통신판매신고 (해당자만 기재)	유 <input type="checkbox"/> 무 <input type="checkbox"/>		신고번호	
식품제조·가공허가 (해당자만 기재)	유 <input type="checkbox"/> 무 <input type="checkbox"/>		허가번호	
홈페이지 (해당자만 기재)	유 <input type="checkbox"/> 무 <input type="checkbox"/>		홈페이지주소	
인터넷 활용정도	상 <input type="checkbox"/> 중 <input type="checkbox"/> 하 <input type="checkbox"/>			
입금 정보	예금주		계좌번호	
	은행명			

※ 주) 장수물 가입은 입점신청전에 장수물에 가입하시고 해당 아이디와 비번을 기재 바랍니다

2. 미니샵(미니샵은 개별 홈페이지와 같음)

구 분	내 용	비 고
미니샵 명		필수 (12글자내 대표적 내용)
미니샵 계정		계정주소는 자동 부여
판매자 닉네임		필수
미니샵 설명		판매자 소개글
검색키워드		키워드 입력

※ 미니샵 작성시 장수물 홈페이지 미니샵 현황 참조

3. 입점희망 농·특산물 현황

구분	상품명				
포장단위(kg,개)					
판매가격(원)					
판매기간					
판매가능량(kg,개)					
인증내용					
신고·허가유무					

4. 입점자 소개

* 입점자가 자랑하고 싶거나 판매상품의 특이성 등 기재

- 농장 현황, 상품의 특징 및 우수성, 농장체험 등

※ 다른 입점자들과 다른 자기만의 특성 위주로 기재

※ 상품에 대한 상세정보 별도 첨부 가능

1. 제정이유

장수군 온라인 쇼핑몰 『장수몰』의 운영에 필요한 지원 사항을 정하여 전자상거래를 통한 소득증대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 쇼핑몰 운영을 체계화하여 장수군 우수 농·특산물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기 위한 사항을 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쇼핑몰에 대하여 정의함 (제2조)
- 나. 쇼핑몰 운영자와 운영방법에 대하여 정함 (제3조)
- 다. 쇼핑몰 입점가능 상품에 대하여 정함 (제4조)
- 라. 쇼핑몰 상품 판매방법에 대하여 정함 (제5조)
- 마. 쇼핑몰 판매 대금 정산과 방법에 대하여 정함 (제10조)
- 바. 쇼핑몰 홍보 방법과 그 범위에 대하여 정함 (제12조)
- 사. 행정적 지원 방법과 그 범위에 대하여 정함 (제13조)

장수군 조례 제 2243호

장수군 장수승마장 관리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

장수군의회 의결을 거친 장수군 장수승마장 관리운영 조례 전부개정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17년 10월 19일

장 수 군 수

장수군 장수승마장 관리운영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장수군 승마레저파크 관리 및 운영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수군 승마레저파크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수군 승마레저파크(이하 "승마레저파크"라 한다)” 란 장수 승마장
(이하 "승마장"이라 한다), 장수 승마체험장(이하 "승마체험장"이라 한다),
장수 승마레저체험촌(이하 "승마레저체험촌"이라 한다) 및 장수 승마로드(이하
"승마로드"라 한다)의 오락과 휴양을 위한 시설을 말한다.

2. "승마장 시설"이란 승마장의 실내마장, 실외마장, 마방과 그에 부속된 설비 또는 비품을 말한다.
3. "승마체험장 시설"이란 승마체험장의 원형마장, 체험주로, 마방, 트로이 목마, 관리사무소와 그에 부속된 설비 또는 비품을 말한다.
4. "승마레저체험촌 시설"이란 승마레저체험촌의 말 역사체험관, 말 조각공원, 게르(숙박시설), 관리사무소와 그에 부속된 설비 또는 비품을 말한다.
5. "승마로드 시설"이란 째지공원, 잔디도로와 그에 부속된 설비 또는 비품을 말한다.
6. "전용사용"이란 승마레저파크의 각종 시설 전부 또는 일부를 일정기간 전용으로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7. "일반사용"이란 승마레저파크의 각종 시설 일부를 일시적 또는 정기적으로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8. "자마 위탁사용"이란 자신이 소유하는 말을 장수군에 위탁하여 관리하면서 승마장시설을 사용할 수 있는 것을 말한다.

제3조(관리·운영) ① 장수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승마레저파크와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처리하며, 관리 및 운영을 위한 인력을 둘 수 있다.

1. 승마레저파크 각종 시설의 관리 및 운영
 2. 승마레저파크 주변 환경 보호 및 관리
 3. 승마레저파크와 관련된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 및 홍보
 4. 승마레저파크 이용자들에 대한 안전사고 예방 및 편의 제공
- ② 군수는 승마레저파크를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기 위하여 승마진흥에 기여할 수 있는 법인·단체·기관이나 개인에게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

제4조(일반사용) ① 일반사용자는 군수가 발행하는 이용권을 구매 후 해당 시설을 사용할 수 있다. 다만, 군수는 공공행사, 체육경기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일반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② 이용권 발행 등 세부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5조(전용사용)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승마레저파크의 각종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용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허가할 수 있다.

1. 공공행사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최 또는 주관하는 경기 또는 행사
2. 체육경기 : 대한체육회, 대한승마협회 및 이에 준하는 단체 또는 그 가맹 경기 단체가 주최 또는 주관하는 경기 또는 행사
3. 승마강습 : 승마활성화를 위하여 보조사업으로 추진하는 강습
4. 학교의 체육활동 등 승마 진흥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6조(전용사용 신청) ① 승마레저파크의 각종 시설을 전용하여 사용하고자 하는 자(또는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자)는 전용사용 신청(또는 전용사용 변경 신청)을 하고,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신청을 허가(또는 변경허가)할 때에는 사용료를 징수하고, 허가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③ 신청, 허가 등 세부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7조(전용사용 허가의 우선순위) 군수는 승마레저파크 사용 신청이 경합된 때에는 다음의 순서에 따라 허가할 수 있다.

1. 제5조제1호의 공공행사
2. 제5조제2호의 체육경기
3. 교육관련 행사와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행사
4. 그 밖에 전시, 공연 등 문화행사

제8조(전용사용 허가의 제한) 군수는 승마레저파크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을 허가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공공질서 및 선량한 풍속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2. 시설의 유지·관리 및 보호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3. 사용료의 미납액이 있거나 사용료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
4. 공공행사, 체육경기 등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9조(전용사용 허가의 취소)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1. 사용허가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한 경우
2. 허가조건을 위반한 경우
3. 사용신청을 철회한 경우

제10조(사용 제한) 군수는 승마레저파크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 입장을 거절하거나 퇴장을 명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1. 공중에 유해한 행위를 한 사람
2. 전염병 등 질병이 있음이 확인된 사람
3. 소란을 피우거나 음주, 고성방가 등으로 타인에게 혐오감을 준 사람

제11조(자마 위탁사용) 군수는 말 소유자와 위탁관리 계약을 체결할 수 있으며, 자마 위탁자는 승마장시설을 사용할 수 있다.

제12조(사용료) ① 승마레저파크의 각종 시설 사용료(부가가치세법 대상 사용료는 부가가치세를 포함한다)는 별표와 같다.

② 승마레저파크의 숙박시설 예약 및 예약금 환급 등 세부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3조(사용료의 감면) ① 군수는 각종 시설 사용료(숙박시설은 제외한다)를 다음 각 호와 같이 감면할 수 있으며, 감경사항을 중복 적용하지 않는다.

1. 일반사용료

가. 제11조 자마위탁자 승마장시설 사용 : 면제

나. 주민등록이 장수군에 되어 있는 자, 전북 투어 패스 제시자,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추진하는 여행주간 기간, 장수군 시티투어 탑승자, 만 65세 이상 노인, 국가유공자, 기초수급자, 장애인 : 100분의 50 감경
다. 20명 이상으로 구성된 단체 : 100분의 30 감경

라. 주민등록이 장수군에 되어 있는 자는 말 역사체험관에 한하여 사용료를 면제한다.

2. 전용사용료

가. 제5조제1호 및 제2호, 제3호의 승마강습 : 면제

나. 제5조제4호의 행사 : 100분의 80 감경

② 감면 신청 등 세부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4조(전용사용료 환급) ① 전용사용료를 이미 납부한 자가 불가피한 사정
 으로 전용사용 신청을 철회한 경우에 군수는 전용사용료의 일부를 환급하여
 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사용자의 귀책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전용사용료
 의 전부를 환급하여야 한다.

② 전용사용료 환급 등 세부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5조(전용사용자의 책임) ① 전용사용자는 안전사고 예방과 시설유지를
 위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② 전용사용자는 사전에 허가된 시설물 등을 설치할 수 있으며, 사용기간 종
 료와 동시에 시설물을 철거하고 원상으로 복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설
 물 등의 설치와 철거에 소요되는 비용은 전용사용자의 부담으로 한다.

제1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체험시설 등 사용료

가. 기간 이용자

구 분	기간별 사용료(원)			비 고	
	1개월	3개월	6개월		
체험시설(원형마장) 【1일 기승 : 30분】	성인	200,000	540,000	960,000	승마장(천천면) 및 승마체험장(장수읍)
	청소년	150,000	405,000	720,000	
	어린이	100,000	270,000	480,000	

※ 기간 이용 감액 요율 : 3개월 10%, 6개월 20%

나. 일일 이용자

구 분	사 용 료(원)	비 고	
체험시설(원형마장) 【1일 기승 : 30분】	성 인	20,000	승마장(천천면) 및 승마체험장(장수읍)
	청소년	13,000	
	어린이	6,000	
체험시설(체험주포) 【1일 기승 : 2바퀴】	성 인	8,000	승마체험장(장수읍)
	청소년	5,000	
	어린이	3,000	
승마로드 【1일 왕복 : 20km】	성 인	40,000	승마장(천천면) ~ 승마체험장(장수읍) (연장 : 10km)
	청소년	30,000	
	어린이	20,000	

※ 승마로드 이용 : 장수군 소유 말 이용 가능

다. 이용자 구분

구 분	정 의
성 인	만 19세 이상인 사람
청소년	만 13세 이상 만 19세 미만인 사람
어린이	초등학교 학생 또는 만 5세 이상 만 13세 미만인 사람

2. 승마장(천천면) 시설 사용료

구 분	금 액(원)	비 고
시설 사용료(실내·외 마장 등)	150,000	기준 : 1일당, 8시간
마방 사용료	50,000	1일 (배합사료 및 건조 미제공)

3. 승마장(천천면) 자마 위탁관리비

구 분	금 액(원)			비 고
	본인	본인 외 1인	본인 외 2인	
1개월 위탁관리	400,000	600,000	800,000	1두당 최대 본인 외 2인 가능

4. 말 역사체험관 사용료

구 분	사 용 료(원)	비 고
말 역사체험관	개인 1,000	승마레저체험촌(장수읍)

5. 게르(숙박시설) 및 야영장 등 사용료

구 분	사 용 료(원)	비 고
게르(숙박시설) 1일 1동	60,000	승마레저체험촌(장수읍)
야영장 1일 1개소	10,000	
전기시설 1일 1개소	5,000	

- ※ 사용기간 종료 후 1시간 이상 지체할 경우 퇴실 조치
- ※ 1일 미만 사용하더라도 1일의 사용료를 징수
- ※ 전기시설 사용료는 야영장 전기시설을 사용할 경우 징수

1. 개정이유

장수 승마레저체험촌이 준공됨에 따라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장수군 장수승마장 관리운영 조례를 전부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제명을 변경함 장수군 장수승마장 관리운영 조례 ⇒ 장수군 승마레저파크 관리 및 운영 조례
- 나. 조례에서 사용되는 용어를 정의함(제2조)
- 다. 장수군 승마레저파크 시설 관리·운영 및 위탁관리에 관한 내용 규정(제3조)
- 라. 일반사용에 관한 내용 규정(제4조)
- 마. 전용사용, 전용사용 신청, 전용사용 허가의 우선순위, 전용사용 허가의 제한, 전용사용 허가의 취소, 사용제한에 관한 내용을 규정(제5조 ~ 제10조)
- 바. 사용료, 사용료의 감면, 전용사용료 환급에 관한 내용 규정(제12조 ~ 제14조)
- 사. 전용사용자의 책임에 관한 내용 규정(제15조)

장수군 조례 제 2244호

장수군 소방취약계층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

장수군의회 의결을 거친 장수군 소방취약계층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17년 10월 19일

장 수 군 수

제1조(목적) 이 조 례는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의2에 따라 장수군 소방취약계층의 소방재난사고 발생요소를 예방하여 안전한 주거환경을 제공함으로써, 생활안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그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소방취약계층”이란 소방재난의 위험에 노출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수군에 주소를 가진 사람을 말한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2.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
3.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에 따른 한부모가족
4.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에 따른 다문화가족
5. 「청소년 기본법」 제3조에 따른 청소년이 가장인 세대
6. 만 65세 이상 단독세대

제3조(책무) 장수군수(이하 “군수” 라 한다)는 소방취약계층의 소방재난사고 예방을 위한 시책을 강구하여 적극 시행하고 지원해야 한다.

제4조(비용지원) 군수는 소방취약계층의 소방재난사고 예방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소방시설의 설치 등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제5조(지원대상 및 범위) ① 지원대상은 제2조에 따른 소방취약계층이며, 건축법 제2조제2항의 단독주택 또는 공동주택(다세대, 연립) 소유자로 한다.

② 지원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다른 법령에 따라 유사한 지원이 되는 경우에는 지원하지 아니할 수 있고, 지원 횟수는 1회에 한한다.

1. 단독경보형감지기
2. 소화기

제6조(지원신청 등) 제5조에 따라 소방시설 설치 지원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서식의 지원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해야 하며, 군수는 필요성·시급성 등에 따라 우선순위를 정하여 최종지원대상자를 결정한다.

제7조(준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장수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1. 제정이유

화재취약계층에 대한 주택용 소방시설을 설치·지원함으로써 소방재난 사고 발생요소를 예방하여 군민의 안전한 주거환경을 제공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소방취약계층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목적(제1조)

나. 소방취약계층의 정의(제2조)

다. 지원대상 및 범위, 지원내용(제5조제1항, 제5조제2항)

라. 지원신청 및 지원 결정(제6조)

장수군 조례 제 2245호

장수군 농산물종합가공센터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

장수군의회 의결을 거친 장수군 농산물종합가공센터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17년 10월 19일

장 수 군 수

장수군 농산물종합가공센터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장수군 농산물 가공시설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수군 농산물 가공시설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산물 가공을 통한 농업인 등의 소득증대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장수군 농산물 가공시설(이하 “가공시설” 이라 한다)” 이란 장수군 식품가공산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구축한 가공사업장 일체를 말한다.
2. “시설물” 이란 가공설비와 부대시설(공조실, 물품보관창고, 사무실, 저장고 등) 기타 운반구 등의 장비를 포함하여 가공시설에 포함된 일체의 재산을 말한다.
3. “농산물” 이란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시행령」 제2조제 1항의 농업활동으로 생산되는 산물을 말한다.
4. “일반이용자” 란 가공시설이 보유한 장비를 일시적으로 이용(단순가공·포장)하는 자를 말한다.
5. “수탁자” 라 함은 장수군수(이하 “군수” 라 한다)로부터 제1호에 따른 가공시설의 관리·운영을 위탁받은 자를 말한다.

제3조(위치) 가공시설의 위치는 장수군 장수읍 와동길 56일원에 둔다.

제4조(기능) 가공시설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장수군 농산물 가공 산업 발전을 위한 사업수행
2. 농·특산물 가공을 통한 상품화 및 가공사업 추진 지원
3. 농산물 가공창업지원 및 시제품·판매용 제품생산 지원
4. 가공제품 품질관리 지원

제2장 운영위원회

제5조(운영위원회 설치 및 구성) ① 군수는 가공시설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장수군 농산물 가공시설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당연직 위원인 위원장,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7인 이내의 위원과 간사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은 성별을 고려하여 균형 있게 위촉한다.

1. 위원장 : 농업기술센터 소장
2. 부위원장 : 가공시설 담당부서장
3. 위원 : 농산물가공창업에 관한 각 분야의 전문가와 「농업인·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4호의 생산자단체, 가공업체 대표
4. 간사 : 가공시설 업무팀장

③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관련업무 재직기간으로 하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④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⑤ 간사는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며 회의록을 작성하여 관리한다.

제6조(임무) 위원회는 가공시설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가공시설의 운영 계획수립 및 평가에 관한 사항
2. 가공시설 시제품개발 기술지원 및 자문에 관한 사항
3. 가공시설 위탁운영자 선정 및 해지에 관한 사항
4. 가공시설 이용료 및 위탁 시 이용료 결정에 관한 사항
5. 사용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시설물 훼손 등에 따른 손해배상 조치의 결정
6. 그 밖의 가공시설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의 결정

제7조(회의 및 의결) ① 정기회는 연 1회 실시하고,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의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개최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 이해관계인 또는 관련 전문가를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제8조(실비변상)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과 관계전문가 등에 대하여 「장수군 각종 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에서 정한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3장 가공시설 운영 및 이용

제9조(운영방법) ① 가공시설은 군수가 직접 운영하거나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운영대표자는 가공시설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이 추진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가공시설의 시설보완 및 현대화 사업
2. 가공제품 품질향상을 위한 가공설비 지원 사업

③ 군수는 가공시설의 효율적 운영 및 관리를 위해서 관리책임자를 둘 수 있다.

제10조(이용) ① 가공시설 이용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사용신청서를 작성·제출 후 승인을 받아야 한다.

- ② 사용허가신청이 경합 될 경우에는 각 호의 순서에 따른다.
1. 식품제조가공업 및 유통전문판매업 자격보유 농업인 및 단체
 2. 가공창업과정 수료 농업인 및 단체
 3. 기타 단순가공 활용 이용자
- ③ 가공시설 이용자는 기간 내에 이용료를 납부하여야 하며, 시설물을 이용함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 ④ 가공시설 이용 중 고의 또는 과실로 가공시설 시설물의 고장, 파손, 훼손 등 손해를 끼쳤을 때에는 원상복구하거나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으로 인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제11조(이용료) ① 가공시설의 시설 이용료는 가공물량, 공공요금 등을 감안하여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하고, 관리위탁 시 이용료에 관한 사항은 수탁자가 군수의 승인을 받아 정한다.
- ② 이용자는 해당하는 요금에 대하여 납부고지서를 발급받아 장수군 금고에 납부하여야 한다.

제4장 관리위탁 운영

- 제12조(관리위탁) ① 군수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따라 가공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관리위탁(이하 “위탁”이라 한다)할 수 있다.
1. 협동조합기본법에 의하여 설립된 협동조합
 2.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4항에 따른 생산자단체 또는 그 생산자단체가 출자하여 설립한 법인

3.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항에서 정한 영농조합법인 및 농업회사법인

4. 경영능력을 갖춘 가공업체 또는 그 밖의 농업관련단체

② 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하고, 5년 이내의 기간으로 1회에 한하여 갱신할 수 있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그 기간을 두 번 이상 갱신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장수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따라 처리해야 한다.

제13조(지원) 군수는 가공시설의 원활한 관리·운동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수탁자에게 행·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4조(위탁주체선정) ① 군수는 가공시설 운영을 위탁할 경우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한다.

② 가공시설의 관리운동을 위탁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위탁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위탁신청서를 제출받은 경우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수탁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1. 시설물 관리운영 계획
2. 경영 및 마케팅 계획

④ 군수는 수탁자가 선정된 경우 협약체결 후 별지 제3호서식의 위탁 지정서를 교부하며 협약내용을 공증하여야 한다.

제15조(위탁계약의 해지 등)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위탁을 해지 또는 해제할 수 있다.

1. 관계법령, 조례, 규칙 등 제반사항을 위반하였을 경우
2. 위탁재산의 관리를 소홀히 하였거나 계약사항을 위반하였을 경우

3. 천재지변 등의 사유로 가공사업장 사용이 불가능할 경우

4. 군수가 직접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하기 위한 경우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처분을 하려는 경우에는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16조(수탁자 사용료) ① 군수는 선정된 수탁자에 대하여 위탁기간 동안의 연간 이용료를 매 연도별로 부과·징수하여야 한다.

② 가공시설 수탁자의 이용료는 가공시설 시설물 투자액과 기계 장비 구입액을 합산한 금액의 100분의 1을 이용료로 정한다. 다만,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4조에 따라 사용료를 100분의 30 이내의 범위에서 감경 할 수 있다.

③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2조제2항에 따라 사용료는 그 전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사용료 전액을 한꺼번에 내는 것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1년 만기정기예금 금리 수준을 고려하여 이자를 붙여 연 4회의 범위 안에서 분할 납부하게 할 수 있다.

④ 수탁자는 군수가 발행한 납입고지서에 따라 이용료를 선납하여야 하며, 이 경우 납기일은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로 한다.

제17조(사용료 반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잔여일의 사용료를 일할 계산하여 환급할 수 있다.

1. 천재지변 등의 사유로 가공시설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2. 군수가 공용 공공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위탁운영을 취소 또는 제한하는 경우

제18조(공과금 등) 위탁운영 기간 중 전기 및 상수도 사용료와 제세공과금 등은 수탁자가 부담한다.

제19조(수탁자의 의무) ① 수탁자는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과 가공시설 운영 관리에 필요한 군수의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와 책임을 진다.

③ 수탁자는 가공시설의 건물·기물이 훼손 또는 멸실되거나 그 밖에 피해가 있는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④ 제3항의 손해배상은 원상복구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원상복구가 불가능 할 때는 그 손해에 상당하는 현금 또는 현물로 변상하여야 한다.

⑤ 수탁자는 관내의 생산자가 위탁한 물품을 고의 또는 과실로 훼손하였을 때에도 책임 변상하여야 한다.

제20조(권리양도제한) 수탁자는 군수의 승인 없이 위탁받은 재산을 타인 또는 단체·법인에게 양도하거나 담보의 목적으로 제공할 수 없다.

제21조(지도·감독) ① 군수는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수탁자의 시설운영 전반을 지도·감독하게 하거나 운영사항과 회계장부, 그 밖의 관련서류를 조사 및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응해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의 지도·감독 결과 시정해야 할 사항이 있을 때에는 수탁기관에게 시정을 명령할 수 있으며, 수탁기관은 이를 이행해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시정 조치할 경우에는 문서로 수탁기관에 통보하고 사전에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5장 보칙

제22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장수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장수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23조(사무의 위임) 군수는 이 조례가 정하는 가공시설의 관리운영에 관한 사무 일체를 농업기술센터소장에게 위임한다.

제2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시 설 (장비) 사 용 허 가 대 장

일련 번호	사용기간		사용시설 (장비명)	사용자		사용료 (원)	비고
	연월일	시 간		주소	성명		

재 산 현 황

1. 재산현황

○ 총괄 현황

(단위 : 천원)

합 계 (A+B+C)	부 동 산(A)			동산(B)	부채(C)
	계	토 지	건 물		

- 평가액 작성기준 : 토지-개별공시지가, 건물-재산세 과표

- 증빙서류 : 공시지가 확인서, 재산세 과세내역서, 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 재산 유형별 현황

▶ 토 지

연번	소 재 지	지 목	면적(m ²)	소유자 (등기부상)	공시지가	비고 (용도)
계						

▶ 건 물

연번	소 재 지	지 목	면적(m ²)	소유자 (등기부상)	재산세과표	비고 (용도)
계						

▶ 동산현황(공증증서, 예금잔액 증명, 유가증권 잔고 등 첨부)

동산형태	금 액	비 고
계		

▶ 부채 현황(증빙서류 첨부)

부채내용	금 액	비 고
계		

법인·단체(개인) 현황

□ 일반현황

- 명 칭 :
- 주 소 :
- 설립일자 :
- 설립근거 및 목적(정관내용)

□ 임원현황

직 위	성 명	생년월일	직업	취임일자	연락처
대표이사					
이 사					
감 사					

□ 연 혁

년 월 일	연 혁

□ 주요사업내용

□ 개인(법인·단체)의 특징

※ 첨부자료 : 설립 인가증 사본, 개인(사업자등록증)

[별지 제3호서식]

장수군 농산물 가공시설 운영·관리 위탁 지정서

위탁시설			
법인(단체)명		법인등록번호	
대표자		생년월일	
소재지			
취급품목			
위탁기간	년	월	일부터 () 년간
	년	월	일까지
<p>「장수군 농산물 가공시설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4조에 따라 장수군 농산물시설물의 운영·관리 위탁 주체로 지정합니다.</p> <p style="text-align: center;">년 월 일</p> <p style="text-align: center;">장 수 군 수 직인</p>			

210mm × 297mm(보존용지(1종) 120g/m²)

1. 개정이유

장수군 식품가공산업의 활성화를 위해 구축한 가공사업장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기존 농산물종합가공센터 관리 조례 전부를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명 개정

- 「장수군 농산물종합가공센터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장수군 농산물 가공시설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나. ‘장수군 농산물 가공시설’ 명칭 정의(제2조)

- 다. 조례 문구변경 : 장수군 농산물종합가공센터 ⇒ 장수군 농산물 가공시설

장수군 조례 제 2246호

장수군 표고 톱밥배지 배양센터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장수군의회 의결을 거친 장수군 표고 톱밥배지 배양센터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17년 10월 19일

장 수 군 수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수군 표고재배 농가에게 양질의 톱밥배지를 공급하여 안정적인 재배기반 조성과 경영비 절감으로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하기 위해 장수군 표고 톱밥배지 배양센터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수군 표고 톱밥배지 배양센터(이하 "배양센터"라 한다)"란 표고버섯 톱밥배지를 생산하는 시설물을 말한다.
2. "이용자"란 배양센터에서 생산된 톱밥배지를 공급받는 장수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거주하는 농업인을 말한다.

제3조(위치) 배양센터는 전라북도 장수군 장수읍 와동길 56 일원에 둔다.

제4조(관리·운영) ① 장수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배양센터 관리·운영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표고 톱밥배지 생산 및 공급
2. 표고 재배기술과 관련된 연구 및 교육
3. 그 밖에 군수가 배양센터 관리·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배양센터의 시설물 관리·운영 책임자는 군 농업기술센터 소장이 되고, 배양센터 관리·운영에 필요한 장부를 비치하고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제5조(생산수급계획) 군수는 표고 톱밥배지를 생산하여 이용자들에게 적정하게 공급할 수 있도록 매년 생산수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6조(신청 및 공급) ① 표고 톱밥배지를 공급받고자 하는 사람은 군수에게 별지 서식으로 신청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표고 톱밥배지 공급 신청이 접수되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이 충족되는지 판단하여, 공급 일시 및 수량 등을 신청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1. 군에 거주하는 농업인
2. 군수가 시행하는 교육을 이수
3. 그 밖에 군수가 생산수급계획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군수는 톱밥배지 공급 후 배양과정에서 발생하는 오염 및 불량배지에 한해서 무상으로 추가 공급할 수 있다.

제7조(공급기준과 제한) ① 군수는 이용자 가구당 30,000봉 이하로 한정하여 공급함을 원칙으로 하고, 생산공급 여유상황에 따라 추가공급이 가능하며, 톱밥배지 분양대금을 미납한 이용자는 그 미납대금을 납부할 때까지 공급이 제한된다.

②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급을 제한할 수 있다.

1. 이용자가 표고 톱밥배지를 판매 등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
2. 공급량의 한계로 공급이 어려운 경우
3. 군 이외 지역에 사용하는 등 공급대상자로서 부적합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경우

제8조(공급가격 및 대금납부) ① 표고 톱밥배지의 공급가격은 원가분석 및 운영비 등을 감안하여 군수가 결정하고, 군 홈페이지 등에 매년 고시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공급가격의 20퍼센트 비용을 선납 받은 후 톱밥배지를 공급할 수 있으며, 이용자는 배지공급 후 1개월 이내에 잔여금 80퍼센트 비용을 납부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공급가격 징수 등 회계절차는 「장수군 재무회계 규칙」을 준용한다.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서식]

표고 톱밥배지 공급 신청서

읍면	농가명	면적(m ²)	재배방법	소요량(봉)	배지형태	보급형태	보급시기
		m ²	전면 · 상면	봉	정사각 · 직사각	접종배지 · 갈변배지	년 월 일

※ 배지형태 및 보급시기는 구체적으로 기재요망

※ 공급 신청 물량에 따라 보급시기 및 보급량은 일부 조정될 수 있음

「장수군 표고 톱밥배지 배양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제6조(신청및공급)에 의거 톱밥배지를 신청하오니 공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 청 자

주 소 :

연 락 처 :

성 명 :

(서명 또는 인)

장수군수 귀하

1. 제정이유

표고 재배농가에 양질의 톱밥배지를 공급하여 안정적인 재배기반 조성
과 경영비 절감을 목적으로 설치한 톱밥배지 배양센터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표고 톱밥배지 배양센터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제1조 ~ 제4조)

나. 표고 톱밥배지 생산 및 수급에 관한 사항(제5조)

다. 톱밥배지 신청 및 공급에 관한 사항(제6조)

– 신청요령, 신청자격, 공급일정통지, 추가공급에 관한 내용 등

라. 톱밥배지 공급기준과 제한 사항(제7조)

마. 공급가격 및 대금 납부에 관한 사항(제8조)

– 공급가격 결정 및 고시방법, 대금 납부방법 등

장수군 조례 제 2247호

장수군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

장수군의회 의결을 거친 장수군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17년 10월 19일

장 수 군 수

장수군 체육진흥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에 제9호 및 제10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9. “학교”란 「초·중등교육법」 제2조 및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
른 학교를 말한다.
- 10. “운동경기부”란 선수로 구성된 학교나 직장 등의 운동부를 말한다.

제4조에 제15호 및 제16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15. 운동경기부 육성
- 16. 학교 체육시설 설치 및 개선사업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1. 개정이유

- 가. 이 개정 조례안은 관내 초·중·고 학교운동부의 육성을 위한 운영 지원과 학교 체육시설 설치 및 개선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자 일부 규정을 개정하고자 함.
- 나. 「지방재정법」 제17조의 규정에 따라 지방보조금 사업 추진과 지원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용어의 정의 추가(제2조)
 - 학교, 운동경기부
- 나. 학교 운동경기부의 육성에 관한 조문 신설(제4조)
 - 군수는 학교체육 진흥 및 건강증진을 위하여 필요시 학교 운동경기부에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규정 마련
- 다. 학교 체육시설 설치 및 개선 사업에 관한 조문 신설(제4조)

장수군 조례 제 2248호

장수군청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

장수군의회 의결을 거친 장수군청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17년 10월 19일

장 수 군 수

장수군청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1호 중 “감독” 을 각각 “부단장” 으로, 같은 호 및 제2호 중 “지도자” 를 각각 “감독” 으로, 같은 호 중 “5명” 을 “6명” 으로 한다.

제4조제3항 중 “2년” 을 “1년” 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임용계약서” 를 각각 “입단계약서” 로 한다.

제6조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 ② 부단장은 단장을 보좌하며, 단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단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③ 감독은 선수의 발굴 및 육성지도, 선수 훈련계획 수립 및 시행, 선수의 경기대회 참가 사항, 선수 합숙소 관리 사항, 선수관리 상황 보고 등 소속 선수의 관리를 총괄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1. 개정이유

이 개정 조례안은 장수군청 직장운동경기부 선수단의 직명을 변경하고 정원을 증원함으로써 장수군 전문스포츠 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고 경쟁력을 강화하는 등 현행 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 하려고 함.

2. 주요내용

- 가. 선수단의 직명 및 직무 조정(제3조, 제6조)
- 나. 장수군청 직장운동경기부 선수 정원을 증원함(제3조)
- 다. 장수군청 직장운동경기부 선수단원의 임용기간 조정(제4조)
- 라. 기타 : 알기쉬운 법령만들기 기준에 따른 자구 수정(제4조)

장수군 규칙 제 1104호

장수군 장수승마장 관리운영 조례 시행규칙 전부개정규칙

장수군 조례·규칙심의회에서 심의·의결한 장수군 장수승마장 관리운영
조례 시행규칙 전부개정규칙을 이에 공포한다.

2017년 10월 19일

장 수 군 수

장수군 장수승마장 관리운영 조례 시행규칙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장수군 승마레저파크 관리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장수군 승마레저파크 관리 및 운영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이용 및 입장시간) ① 장수군 승마레저파크(이하 “승마레저파크” 라
한다) 시설 이용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1. 3월 ~ 10월 : 09:00 ~ 12:00, 13:00 ~ 18:00
- 2. 11월 ~ 2월 : 09:00 ~ 12:00, 13:00 ~ 17:00

- ② 승마레저파크 입장시간은 9시부터 이용시간 종료 1시간 전까지로 한다.
- ③ 숙박시설 이용시간은 입실일 15시부터 퇴실일 13시까지로 한다.
- ④ 승마레저파크 시설 휴업일은 매주 월요일, 화요일 및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제1호의 일요일을 제외한 공휴일로 한다. 다만, 숙박시설은 제외한다.
- ⑤ 군수는 승마레저파크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경우 이용 및 입장시간 변경사항을 사전에 게시하고 한시적으로 변경할 수 있다.

제3조(이용권 등) ① 장수군 승마레저파크 관리 및 운영 조례(이하 “조례” 라 한다) 제4조에 따라 발행하는 승마레저파크 이용권은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다. 다만, 이용권 발매를 전산처리 할 경우에는 전산서식으로 이를 대체할 수 있다.

- ② 이용권 수불대장은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하고, 승마레저파크 시설 이용 일계표는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다. 다만, 제1항 단서에 따른 전산서식으로 이를 대체할 수 있다.
-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이용권은 홈페이지 예약시스템 등을 이용하여 관리할 수 있다.

제4조(전용사용 신청서 등) ① 조례 제6조에 따른 신청서는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하고, 허가서는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한다.

- ② 승마레저파크 전용사용 변경 신청서는 별지 제6호서식에 의하고, 변경 허가서는 별지 제7호서식에 의한다.

제5조(예약) ① 장수 승마레저체험촌의 숙박시설을 예약하려는 사람(이하 “예약자”라 한다)은 사용예정일의 한 달 전부터 유선 또는 인터넷으로 예약을 할 수 있으며, 예약한 날부터 3일 이내에 예약자 명의로 숙박시설 사용료 전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숙박시설 사용료 전액을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 예약은 실효된다.

③ 예약자는 사용예정일까지 언제든지 예약을 취소할 수 있다.

제6조(예약금 환급) ① 군수는 예약이 실효되거나 취소된 경우 10일 이내에 공정거래위원회가 고시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예약자가 납부한 예약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환급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환급금을 예약자 명의의 금융기관 계좌로 이체한다.

제7조(사용료 감면 신청) ① 조례 제13조에 따라 일반사용자는 감면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제시하여 사용료 감면을 받을 수 있다.

② 조례 제13조에 따라 전용사용자는 별지 제8호서식의 감면신청서를 작성·제출하여 사용료 감면을 받을 수 있다. 다만, 공공기관의 경우에는 감면 요청 공문서로 갈음할 수 있다.

제8조(전용사용료 환급) ① 조례 제14조에 따른 환급금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용예정일 10일전까지 전용사용 신청을 철회할 경우 : 사용료의 5퍼센트 공제 후 환급
2. 사용예정일 5일전까지 전용사용 신청을 철회할 경우 : 사용료의 20퍼센트 공제 후 환급

3. 사용예정일 1일전까지 전용사용 신청을 철회할 경우 : 사용료의 50퍼센트 공제 후 환급

② 제1항의 전용사용료를 환급받고자 하는 사람은 전용사용 신청을 철회하고, 별지 제9호서식의 환급신청서를 작성·제출하여야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서식]

장수 승마체험장 일일 이용권

	← 2 cm →	← 5 cm →	← 5 cm →	← 9 cm →
편철 부분	장수 승마체험장이용권 (O O) NO : 호 구분 : 금액 : 원 (기승시간 30분 이내) 20 . . . 장수군수인	장수 승마체험장이용권 (O O) NO : 호 구분 : 금액 : 원 (기승시간 30분 이내) 20 . . . 장수군수인	대표적사진 (승마체험장 전경 등)	

- 주) 1. ()내서는 성인, 청소년, 어린이로 명시하여 구분한다.
 2. 구분은 개인, 개인감면, 단체감면으로 명시 구분한다.

장수 승마장 일일 이용권

	← 2 cm →	← 5 cm →	← 5 cm →	← 9 cm →
편철 부분	장수 승마장이용권 (O O) NO : 호 구분 : 금액 : 원 20 . . . 장수군수인	장수 승마장이용권 (O O) NO : 호 구분 : 금액 : 원 20 . . . 장수군수인	대표적 사진 (승마장 전경 등)	

- 주) 1. ()내서는 성인, 청소년, 어린이, 마방으로 명시하여 구분한다.
 2. 구분은 개인, 개인감면, 단체감면으로 명시 구분한다.

장수 승마레저체험촌 일일 이용권

	← 2 cm →	← 5 cm →	← 5 cm →	← 9 cm →
편철 부분	장수 승마레저체험촌 이용권 (O O) NO : 호 시설명: 게르 말 역사체험관 구분 : 금액 : 원 20 . . . 장수군수인	장수 승마레저체험촌 이용권 (O O) NO : 호 시설명: 게르 말 역사체험관 구분 : 금액 : 원 20 . . . 장수군수인	대표적 사진 (승마레저체험촌 전경 등)	

- 주) 1. ()내서는 성인, 청소년, 어린이로 명시하여 구분한다.
 2. 구분은 개인, 개인감면, 단체감면으로 명시 구분한다.

장수 승마체험장 기간 이용권

(앞면)

장수 승마체험장

사 진	이용기간 : 20 ~ 성 명 : 0 0 0
--------	--

장수군

※ 규격 : 가로 8.6cm × 세로 5.4cm

(뒷면)

장수 승마체험장

○ 이용시간(시행규칙에 의거 이용시간은 변경될 수 있음)

구 분	시 간	구 분	시 간
3월 ~ 10월	09:00 ~ 18:00	11월 ~ 2월	09:00 ~ 17:00

○ 이용안내

- 장수 승마체험장 이용 시 본증을 휴대하여야 합니다.
- 본증을 타인에게 양도 또는 대여할 수 없습니다.
- 본증의 구입 후 환불은 사용개시 전일까지 가능하며 상기 이용시간 내에 구입처를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 일일 기승시간은 30분 이내이며 당일 기상여건에 따라 이용이 제한받을 수 있습니다.
- 휴장일 : 매주 월 · 화요일, 일요일을 제외한 공휴일

전북 장수군 장수읍 승마로 74 전화 063)000-0000

장수 승마장 기간 이용권

(앞면)

장수 승마장

사 진	이용기간 : 20 ~ 성 명 : 0 0 0
--------	--

장수군

※ 규격 : 가로 8.6cm × 세로 5.4cm

(뒷면)

장수 승마장

○ 이용시간(시행규칙에 의거 이용시간은 변경될 수 있음)

구 분	시 간	구 분	시 간
3월 ~ 10월	09:00 ~ 18:00	11월 ~ 2월	09:00 ~ 17:00

○ 이용안내

- 장수 승마체험장 이용시 본증을 휴대하여야 합니다.
- 본증을 타인에게 양도 또는 대여할 수 없습니다.
- 본증의 구입 후 환불은 사용개시 전일까지 가능하며 상기 이용시간 내에 구입처를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 일일 기승시간은 30분 이내이며 당일 기상여건에 따라 이용이 제한받을 수 있습니다.
- 휴장일 : 매주 월 · 화요일, 일요일을 제외한 공휴일

전북 장수군 장수읍 승마로 913 전화 063)000-0000

[별지 제2호서식]

() 이용권 수불부

()

일 자	적 요	수 입(매)	지 출(매)	잔 량(매)	결 재		
					담당자	팀 장	과 장

주) ()에는 성인 개인, 성인 단체 또는 감면, 청소년 개인, 청소년 단체 또는 감면, 어린이 개인, 어린이 단체 또는 감면, 마방으로 구분 표기

[별지 제3호서식]

() 이용 일계표

담당자	팀 장	과 장	결 재

사업장 명칭 : 장수 ()

년 월 일

종류	구분		일 계			누 계			비고
			이용객 (명)	금 액(원)		이용객 (명)	금 액(원)		
				카드	현금		계	카드	
합 계									
이용객	성인	개인							
		단체							
		감경							
	청소년	개인							
		단체							
		감경							
	어린이	개인							
		단체							
		감경							
	면제	성인							
		청소년							
		어린이							
	마 방								

[별지 제 4호서식]

승마레저파크 전용사용 신청서 (제5조 관련)						
사용자	주 소				전 화 번 호	
	단 체 명 (법인 또는 단체인 경우)		성 명 (대표자)		생년월일	
사용목적						
사용기간	20 년 월 일 시부터 20 년 월 일 시까지			사용인원	명	
사용시설						
<p>장수군 승마레저파크 관리 및 운영 조례 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전용사용을 신청합니다.</p> <p style="text-align: center;">20 년 월 일</p> <p style="text-align: center;">신청인(대표자) : 서명 또는 날인</p> <p>장수군수 귀하</p>						

[별지 제5호서식]

승마레저파크 전용사용 허가서 (제5조 관련)						
사용자	주 소				전 화 번 호	
	단 체 명 (법인 또는 단체인 경우)		성 명 (대표자)		생년월일	
사용시설						
사용기간	20 년 월 일 시부터 20 년 월 일 시까지	사용인원		명		
허가조건						
<p>장수군 승마레저파크 관리 및 운영 조례 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전용사용을 허가합니다.</p> <p>20 년 월 일</p> <p>장 수 군 수</p>						

[별지 제7호서식]

승마레저파크 전용사용 변경 허가서 (제5조 관련)						
사용자	주 소				전 화 번 호	
	단 체 명 (법인 또는 단체인경우)		성 명 (대표자)		생년월일	
사용목적						
허가사항	당초 허가내용			변경 허가내용		
사용시설						
사용기간	20 년 월 일 시부터 20 년 월 일 시까지			20 년 월 일 시부터 20 년 월 일 시까지		
기타사항						
<p>장수군 승마레저파크 관리 및 운영 조례 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전용사용 변경을 허가합니다.</p> <p style="margin-left: 200px;">20 년 월 일</p> <p style="margin-left: 200px;">장 수 군 수</p>						

[별지 제8호서식]

전용사용료 감면신청서

신청자 (대표자)	주소			
	단체명		대표자명	
	생년월일		전화번호	
사용시설				
행사명				
사용기간	년 월 일 시부터		년 월 일 시까지 (일간)	
구분	사용료	감면액	감면사용료	

감면사유 :

장수군 승마레저파크 관리 및 운영 조례 제13조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료 감면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대표자) : 서명 또는 날인

장수군수 귀하

[별지 제9호서식]

전용사용료 환급신청서

신청자 (대표자)	주소			
	단체명		대표자명	
	생년월일		전화번호	
사용시설				
행사명				
사용신청기간	년 월 일	시부터	년 월 일	시 까지 (일간)
구분	납부액	반환액	비고	

사용료 환급 신청사유 :

장수군 승마레저파크 관리 및 운영 조례 제1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료 환급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대표자) : 서명 또는 날인

장수군수 귀하

1. 개정이유

「장수군 장수승마장 관리운영 조례」를 전부 개정함에 따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장수군 장수승마장 관리운영 조례 시행규칙을 전부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제명을 변경 : 장수군 장수승마장 관리운영 조례 시행규칙

⇒ 장수군 승마레저파크 관리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나. 승마레저파크 시설 이용시간 및 휴업일을 규정(제2조)

다. 승마레저파크 시설 이용권 등에 관한 내용을 규정(제3조)

라. 승마레저파크 시설 전용사용 신청 등에 관한 내용을 규정(제4조)

마. 예약 및 예약금의 환급 등에 관한 내용을 규정(제5조, 제6조)

바. 승마레저파크 시설 사용료 감면 신청, 전용사용료의 환급에 관한 내용을 규정(제7조, 제8조)

장수군 규칙 제 1105호

장수군청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장수군 조례·규칙심의회에서 심의·의결한 장수군청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을 이에 공포한다.

2017년 10월 19일

장 수 군 수

장수군청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5호 중 “지도자” 를 “감독” 으로 한다.

제3조의 제목 “(근로계약의 체결)” 을 “(입단계약의 체결)” 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본문 중 “근로계약을” 을 “입단계약을” 로, “근로계약은 2년” 을 “입단계약은 1년” 으로 하며, 같은 항 단서 중 “연봉계약은 1년 단위로 하되, 연도” 를 “연도” 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근로계약” 을 “입단 계약” 으로 한다.

제6조제3항 중 “지도자평가” 를 “감독평가” 로 한다.

제9조제3항 중 “20일” 을 “25일” 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및 제5항 중 “지도자” 를 각각 “감독” 으로 한다.

제11조제2항 중 “지도자는” 을 “감독은” 으로 한다.

제20조제1항제1호 중 “지도자” 를 “감독” 으로 한다.

별표 1, 별표3, 별표5, 별표6, 별표8 및 별표 9를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4호서식, 별지 제7호서식 및 별지 제8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단원의 자격요건(제6조제1항 관련)

자 격 요 건

[감 독]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 제9조의 규정에 의한 2급 이상의 경기지도자 자격증 소지자로
3년 이상의 지도자 경력 내지 능력이 있는 자

[선 수]

- 가. 최근 3년 이내에 전국소년체육대회, 전국체육대회 등 전국 규모이상 대회에서 상위
(1, 2, 3위) 입상실적이 있는 자
- 나. 가목에 규정된 자와 동등 이상의 자격이 있고 무한한 잠재능력과 발전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자

【별표 3】

단원의 개인별 등급산정 기준표(제6조제3항 관련)

성명	등급	총점 (100점)	경기 성적 (50점)	훈련평가(20점)		경력(20점)				감독 평가 (10점)	비고
				훈련 성실도	전술 이해도	10년 이상	5년 이상 10년 미만	3년 이상 5년 미만	3년 미만		
점수배점		100점	50	10	10	20	15	10	5	10	

○ 경기성적

- 1년간 대회 입상성적 중 상위 5개 성적을 합산하여 평가한다.(최대 50점)
· 1개의 대회 입상성적 중 최고 성적(메달) 1개만 합산
- 대회별 배점기준은 다음과 같다.

구분	1위	2위	3위	등외
올림픽, 세계선수권, 아시아경기대회	50점	45점	40점	15점
전국체육대회, 기타 국제대회	35점	30점	25점	
전국규모 대회	25점	20점	15점	
시·도 대회	15점	10점	5점	

- 부상 등으로 1년간 출전한 대회 수가 2개 이하일 경우, 전년도 입상 성적 중 최고성적 1개를 합산한다.

○ 훈련평가(훈련성실도, 전술이해도), 감독평가

: 상대평가를 실시하여 감독이 부여

인원	상(9점 ~ 10점)	중(7점 ~ 8점)	하(4점 ~ 6점)
6명	2명	3명	1명
5명	1명	3명	1명
4명	절대평가		

- 경력은 고등학교 졸업이후 선수경력을 의미하며, 청소년 국가대표, 유니버시아드 국가대표, 1.2군 국가대표 출신 선수에 대하여는 10점의 경력점수를 가산한다.

【별표 5】

감독 및 선수 연봉 산정표(제9조제2항 관련)

(단위 : 천원)

구 분	등 급	등 급 점 수	연 봉		비 고
			하 한 액	상 한 액	
감독			37,000	45,000	
선 수	S급	96 ~ 100	44,000	50,000	
	A급	90 ~ 95	38,000	44,000	
	B급	80 ~ 89	32,000	38,000	
	C급	70 ~ 79	26,000	32,000	
	D급	69 이하	20,000	26,000	

○ 다음 각 호의 선수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5천만 원을 초과하는 연봉을 지급할 수 있다.

- 국가대표로 올림픽, 아시아경기대회, 세계선수권대회 등 국제대회에 출전하여 입상한 선수로 탁월한 실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선수
- 무한한 잠재능력과 발전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유망 선수

【별표 6】

감독 및 선수 수당(제9조 제5항 관련)

구 분	지급금액(원)	비 고
감독	400,000	※ 매월 보수지급일에 지급함.
선수(훈련)	300,000	

【별표 8】

대회출전비 및 전지훈련비 지급기준(제14조제2항 관련)

(단위 : 일/원)

계	일 비	식 비	숙박비	목욕비	간식비	운 임	비 고
75,000	10,000	30,000	25,000	5,000	5,000	실 비	1인 기준

※ 감독의 숙박비는 일 50,000원으로 한다.

※ 그 밖에 여비 지급에 관한 사항은 「공무원 여비 규정」을 준용한다.

【별표 9】

포상금 지급기준(제21조제2항 관련)

(단위 : 천원)

구 분		1위(금)	2위(은)	3위(동)	비 고
올 림 픽	단체전	10,000	7,000	5,000	
	개인전	10,000	7,000	5,000	
세계선수권 대회	단체전	7,000	5,000	3,000	
	개인전	7,000	5,000	3,000	
아시아경기 대회	단체전	6,000	4,000	2,000	
	개인전	6,000	4,000	2,000	
국제대회 세계탁구연맹 주관대회 아시아탁구연맹주관대회	단체전	5,000	3,000	1,500	
	개인전	3,000	2,000	1,000	
기타 국제대회 및 국내1급 대회	단체전	5,000	3,000	1,500	
	개인전	2,000	1,500	1,000	
국내2급 대회	단체전	2,000	1,000	500	
	개인전	1,000	700	300	

※ 단원이 같은 대회에서 2개 종목 이상 입상한 경우, 많은 금액은 100분의 100을 지급하고, 나머지는 100분의 50을 지급한다.

※ 감독은 최고 수혜선수와 함께 지급한다.

※ 국내1급 대회

: 전국남녀종별탁구선수권대회, 전국남녀종합탁구선수권대회,
국내 오픈대회(왕중왕전, 챔피언전등), 대통령배 전국탁구대회,
전국체전, 회장기실업연맹전

국내2급 대회 : 춘계 · 추계 회장기 대회(시 · 도 대회)

【별지 제2호서식】

입 단 계 약 서(제3조 관련)

장수군청 직장운동경기부 감독 및 선수 임용에 있어 사용자인 장수군수와 입단자인 는 「장수군청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 조례」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단계약을 체결한다.

- 1. 계약기간 :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 2. 직 종 : 장수군청 직장운동경기부 단원(종목 :)
- 3. 단원의 직책 :
- 4. 보 수
 - 가. 연 봉 : 원
 - 나. 수 당 : 「장수군청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른 수당
 다. 지급방법 : 입단자 명의 계좌 입금
- 5. 입단조건 : 「장수군청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 조례」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의 관련 규정 적용
- 6. 위 입단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장수군청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 조례」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을 적용한다.

위와 같이 입단계약을 체결하고 각자가 이를 성실히 준수하여 이행하기로 서약하며 이 계약서를 작성하여 각각 1부씩 보관한다.

 년 월 일

(사용자) 주 소 : 장수군 장수읍 호비로 10
 대 표 자 : 장 수 군 수 (인)

(입단자) 주 소 :
 성 명 : (인)

【별지 제4호서식】

직장운동경기부 단원 인사기록부(제4조 관련)

관리번호				사 진
주 소				
성 명	(한자)			
생년월일		전화 번호		
최종출신 학 교		졸업 연월일	년	월 일
입단일자		계약 구분	감독, 선수	
신규입단 시 등급 및 연봉		현재 등급 및 연봉		
경 력 사 항				
기 간	소속	출전횟수	입 상 내 역	비고

【별지 제7호서식】

직장운동경기부 훈련일지(제11조 관련)

				감독	부단장	단장	결 재
20 년 월 일(요일) 날씨:							
훈련시간	장 소	참가자	훈 련 내 용			비 고	

【별지 제8호서식】

단 원 증(제16조 관련)

(전면)

단 원 증

사 진

성 명
장 수 군

(후면)

No.

소 속 장수군청 탁구단
직위/직급
성 명
생년월일

20 . . .

장 수 군 수

- 규격 : 가로 5.4cm, 세로 8.56cm

1. 개정이유

장수군청 직장운동경기부 선수단의 직명을 변경하고 정원을 증원하는 등 장수군 전문스포츠 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고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현행 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고 함.

2. 주요내용

- 가. 선수단의 직명 및 직무 조정(제2조, 제6조, 제9조, 제11조, 제20조)
- 나. 장수군청 직장운동경기부 선수 정원을 증원함(별표)
- 다. 장수군청 직장운동경기부 선수단원의 임용기간 조정(제3조)
- 라. 보수 지급 일자를 4대보험 고지서 발행일 등을 고려하여 변경(제9조)
- 마. 기타 : 알기쉬운 법령만들기 기준에 따른 자구 수정(제3조)

장수군 공고 제 2017 - 817호

이 조례(안)은 확정된 입법안이 아니므로 조례규칙심의회 심의결과에 따라 내용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장수군 문화예술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장수군 문화예술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장수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7년 10월 16일

장 수 군 수

1. 자치법규명 : 장수군 문화예술촌 설치 및 운영 조례

2. 개정이유

이 개정 조례안은 장수군 문화예술촌 위탁운영과 관련하여 지자체장의 권한을 과도하게 부여한 사항 및 주관적인 사항을 삭제하여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근거 법령 조항 변경(안 제1조)

나. 문화예술촌 위탁운영의 취소·해제 시 불합리한 규제 규정 조문 삭제
- 안 제11조제1항제4호, 제6호, 제7호

4. 의견제출

이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17년 11월 5일까지 장수군수에게 [별지 서식 1]을 이용하여 다음의 방법으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다만, 의견제출 방법 4)의 경우에는 [별지 서식 1]을 이용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가. 의견제출 방법

- 1) 주 소 : 장수군 장수읍 한누리로 393 장수군수(문화체육관광사업소)
- 2) 팩 스 : 063-350-2519
- 3) E - mail : thduddnd@korea.kr.
- 4) 장수군 홈페이지 자치법규/입법예고란 - 자치법규 - 의견달기
- 5) 직접방문

나.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다. 성명(기관·단체의 경우에는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라. 그 밖에 참고사항

5. 기타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장수군 문화체육관광사업소 담당자(전화: 063-350-5542)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별지 서식]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자치법규명 :

○ 성명(단체명) : (서명 또는 날인)

○ 주 소 :

○ 전 화 번 호 :

자치법규안 내용	찬 반 여 부		의 견	비 고
	찬성	반대		

장수군 문화예술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장수군 문화예술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지방자치법 제135조” 를 “지방자치법 제144조” 로 한다.

제11조제1항제4호, 제6호 및 제7호를 각각 삭제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1조(목적) 이 조례는 문화예술 진흥법 제3조 및 지방자치법 제135조에 따라 지역문화예술 창달을 위하여 장수군 문화예술촌을 설치하고 그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제11조(위탁운영의 취소·해제)</p> <p>①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탁운영을 취소·해제할 수 있다.</p> <p>1. ~ 3. (생략)</p> <p>4. 문예촌 목적에 위배되는 사업을 할 때</p> <p>5. (생략)</p> <p>6. 수탁기관이 관리능력이 없거나 운영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p> <p>7. 기타 사정으로 인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취소·해제를 결정하였을 때</p> <p>② (생략)</p>	<p>제1조(목적) ----- ----- 지방자치법 제144조----- ----- ----- ----- 제11조(위탁운영의 취소·해제)</p> <p>①----- ----- -----.</p> <p>1. ~ 3. (현행과 같음)</p> <p>〈삭제〉</p> <p>5. (현행과 같음)</p> <p>〈삭제〉</p> <p>〈삭제〉</p> <p>② (현행과 같음)</p>

장수군 공고 제 2017 - 105호

장수누리파크 조성사업 시행계획 변경 승인 고시

「농어촌정비법」 제6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8조에 의거 장수누리파크
파크 조성사업 시행계획 변경 승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라 군관리계획의 결정(변경)을 고시하고, 같은 법 제32조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의거 지형도면을 다음과 같이
승인하고 고시합니다. 관계도서는 장수군청 농업정책과에 비치하여 일반
인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2017년 9월 29일

장 수 군 수

1. 장수누리파크 조성사업 시행계획

가. 사업의 명칭

- 장수6차지구조성사업 추진을 위한 누리파크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나. 사업의 목적

- 6차산업 체험가공센터 신축 등 장수누리파크 활성화를 위한 체험
관광시설 확충을 위한 구역 변경

다. 사업비 : 774,999천원

라. 주요 사업내용

- 체험가공센터 신축 및 체험교육장 리모델링
- 지구단위계획 변경

구 분	계	체험시설용지	공공시설용지	녹지용지
변경전	131,319	54,626	21,893	54,800
변경후	97,170	37,209	20,587	39,374
증 감	△ 34,149	△ 17,417	△ 1,306	△15,426

마. 사업시행자 : 장수군수

바. 사업시행기간 : 2017. 9월 ~ 2018. 12월

2.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 조서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 조서

구분	도면표시 번호	구역명	위치	면적(m ²)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변경	11	장수누리파크 지구단위계획구역	장수읍 두산리 347-1번지 일원	131,319	감) 34,149	97,170	전라북도고시 제2013-248호 (13.10.18)	특정형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표시 번호	구역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11	장수누리파크 지구단위계획구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명칭변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두산지구→장수누리파크 ◦ 면적변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31,319m²→97,170m²(감 34,149m²)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장수누리파크 활성화를 위한 체험·관광시설 확충 및 농어촌정비법 제61조 시행계획 승인(변경) 고시를 반영한 명칭 및 구역변경

3.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조서

가. 용도지역·지구간의 변경에 관한 군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

 용도지역 결정(변경) 조서 : 변경없음

구분	면적(m ²)			구성비(%)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계획관리지역	97,170	-	97,170	100.0	

 용도지구 결정(변경) 조서 : “해당사항 없음”

나. 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에 관한 군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

1) 도로

도로 결정(변경) 조서

구분	규모				기능	연장 (m)	기점	종점	사용 형태	주요 경과지	최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기정	소로	1	1	10	국지 도로	377	장수읍 두산리 994-2	장수읍 두산리 976-1	일반 도로	-	전라북도고시 제2013-248호 (13.10.18)	
변경	소로	1	1	10	국지 도로	377	장수읍 두산리 981-1	장수읍 두산리 1061	일반 도로	-	전라북도고시 제2013-248호 (13.10.18)	
기정	소로	1	2	10	국지 도로	225	장수읍 두산리 979-1	장수읍 두산리 1003	일반 도로	-	전라북도고시 제2013-248호 (13.10.18)	
변경	소로	1	2	10	국지 도로	226	장수읍 두산리 979-2	장수읍 두산리 1003	일반 도로	-	전라북도고시 제2013-248호 (13.10.18)	

도로 결정(변경) 사유서

변경전 도로명	변경후 도로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소로1-1	소로1-1	◦ 선형변경 - 폭원 : 10m, 연장 : 377m	◦ 기개설된 현황도로를 반영하여 선형변경
소로1-2	소로1-2	◦ 선형변경 - 폭원 : 10m - 연장 : 225m → 226m(증 1m)	◦ 소로1-1호선의 선형변경으로 인한 기점부 노선 연장

2) 주차장

주차장 결정(변경) 조서

구분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위치	면 적(㎡)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변경	①	주차장	장수읍 두산리 977번지 일원	5,830	감) 312	5,518	전라북도고시 제2013-248호 (13.10.18)	

주차장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①	주차장	◦ 면적축소 - 5,830㎡→5,518㎡(감 312㎡)	◦ 장수누리파크내 가구 및 획지경계선 조정에 따른 면적축소

다. 가구 및 획지의 규모와 구성에 관한 군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

□ 가구 및 획지의 규모와 구성에 관한 결정 조서[기정]

도면번호	가구번호	면적(㎡)	획지			비 고
			번호	위치	면적(㎡)	
합	계	131,319	-	-	131,319	-
A	A1	2,767	A1-1	두산리 420-1답 일원	2,767	체험시설용지
	A2	3,904	A2-1	두산리 981답 일원	2,654	체험시설용지
			A2-2	두산리 982답 일원	1,250	체험시설용지
	A3	1,248	A3-1	두산리 986답 일원	1,248	체험시설용지
	A4	1,330	A4-1	두산리 984답 일원	1,330	체험시설용지
	A5	1,337	A5-1	두산리 1004답 일원	1,337	체험시설용지
	A6	912	A6-1	두산리 1004답 일원	912	체험시설용지
	A7	2,168	A7-1	두산리 1021답 일원	2,168	체험시설용지
	A8	1,759	A8-1	두산리 1008답 일원	1,759	체험시설용지
	A9	6,502	A9-1	두산리 1024답 일원	6,502	체험시설용지
	A10	1,297	A10-1	두산리 1012답 일원	1,297	체험시설용지
	A11	812	A11-1	두산리 1013답 일원	812	체험시설용지
	A12	1,360	A12-1	두산리 993답 일원	1,360	체험시설용지
	A13	2,932	A13-1	두산리 1011답 일원	2,932	체험시설용지
	A14	1,941	A14-1	두산리 989답 일원	1,941	체험시설용지
	A15	1,085	A15-1	두산리 347-1답 일원	1,085	체험시설용지
A16	23,272	A16-1	두산리 1031답 일원	23,272	체험시설용지	
B	B1	5,830	B1-1	두산리 977답 일원	5,830	공공시설용지
C	C1	54,800	C1-1	두산리 1007답 일원	54,800	녹지용지
도	로	16,063	-	-	16,063	공공시설용지

□ 가구 및 획지의 규모와 구성에 관한 결정(변경) 조서[변경]

도면번호	가구번호	면적(㎡)	획지			비 고
			번호	위치	면적(㎡)	
합	계	97,170	-	-	97,170	-
A	A1	2,915	A1-1	두산리 420-1 일원	2,915	체험시설용지
	A2	7,849	A2-1	두산리 981 일원	7,849	체험시설용지
	A3	1,246	A3-1	두산리 986 일원	1,246	체험시설용지
	A4	1,327	A4-1	두산리 984 일원	1,327	체험시설용지
	A5	1,335	A5-1	두산리 1004 일원	1,335	체험시설용지
	A6	911	A6-1	두산리 1004 일원	911	체험시설용지
	A7	2,164	A7-1	두산리 1021 일원	2,164	체험시설용지
	A8	3,508	A8-1	두산리 1008 일원	3,508	체험시설용지
	A9	6,391	A9-1	두산리 1024-1 일원	6,391	체험시설용지
	A10	1,294	A10-1	두산리 1012 일원	1,294	체험시설용지
	A11	811	A11-1	두산리 1013 일원	811	체험시설용지
	A12	1,540	A12-1	두산리 993 일원	1,540	체험시설용지
	A13	2,929	A13-1	두산리 1011 일원	2,929	체험시설용지
	A14	1,920	A14-1	두산리 989 일원	1,920	체험시설용지
	A15	1,069	A15-1	두산리 347-1 일원	1,069	체험시설용지
B	B1	5,518	B1-1	두산리 977 일원	5,518	공공시설용지
C	C1	39,374	C1-1	두산리 1007 일원	39,374	녹지용지
도 로	-	15,069	-	-	15,069	공공시설용지

라. 건축물에 대한 군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

□ 건축물에 대한 결정 조서[기정]

도면번호	위 치	구 분	계획내용
A	A1-1	지정용도	◦ 건축법시행령[별표1] 제3호 제1종근린생활시설 중 공중화장실
		불허용도	◦ 지정용도 이외의 용도
		건폐율	◦ 20% 이하
		용적률	◦ 20% 이하
		높 이	◦ 1층
		배 치	◦ 건축물의 주방향은 일조, 채광, 통풍 등을 고려하여 가급적 동향 또는 남향으로 배치하고, 불가피한 경우 대지조건에 맞게 배치 ◦ 건축물의 규모, 지형조건 및 주변여건을 고려한 배치로 시각적 개방감 확보
		형 태	◦ 지붕의 형태는 랜드마크, 상징성이 발휘될 수 있도록 계획 ◦ 옥탑구조물은 가급적 설치를 지양하되, 불가피한 경우 가로경관에 영향을 주지 않는 범위내에서 지붕형태와 조화를 이루도록 계획
		색 채	◦ 주조색 : 주변 자연환경과 조화되는 색채를 사용하되, 가급적 원색지양 ◦ 보조색 : 주조색과 같은 계열의 색
		건축선	-
A	A2-2	지정용도	◦ 건축법시행령[별표1] 제3호 제1종근린생활시설 중 소매점, 제4호 제2종근린생활시설 중 사무소, 제5호 문화 및 집회시설 중 전시장
		불허용도	◦ 지정용도 이외의 용도
		건폐율	◦ 40% 이하
		용적률	◦ 40% 이하
		높 이	◦ 1층
		배 치	◦ 건축물의 주방향은 일조, 채광, 통풍 등을 고려하여 가급적 동향 또는 남향으로 배치하고, 불가피한 경우 대지조건에 맞게 배치 ◦ 건축물의 규모, 지형조건 및 주변여건을 고려한 배치로 시각적 개방감 확보
		형 태	◦ 지붕의 형태는 랜드마크, 상징성이 발휘될 수 있도록 계획 ◦ 옥탑구조물은 가급적 설치를 지양하되, 불가피한 경우 가로경관에 영향을 주지 않는 범위내에서 지붕형태와 조화를 이루도록 계획
		색 채	◦ 주조색 : 주변 자연환경과 조화되는 색채를 사용하되, 가급적 원색지양 ◦ 보조색 : 주조색과 같은 계열의 색
		건축선	-

도면번호	위 치	구 분	계획내용
A	A4-1	지정용도	◦ 건축법시행령[별표1] 제4호 제2종근린생활시설 중 제조업소, 제5호 문화 및 집회시설 중 전시장
		불허용도	◦ 지정용도 이외의 용도
		건폐율	◦ 40% 이하
		용적률	◦ 40% 이하
		높 이	◦ 1층
		배 치	◦ 건축물의 주방향은 일조, 채광, 통풍 등을 고려하여 가급적 동향 또는 남향으로 배치하고, 불가피한 경우 대지조건에 맞게 배치 ◦ 건축물의 규모, 지형조건 및 주변여건을 고려한 배치로 시각적 개방감 확보
		형 태	◦ 지붕의 형태는 랜드마크, 상징성이 발휘될 수 있도록 계획 ◦ 옥탑구조물은 가급적 설치를 지양하되, 불가피한 경우 가로경관에 영향을 주지 않는 범위내에서 지붕형태와 조화를 이루도록 계획
		색 채	◦ 주조색 : 주변 자연환경과 조화되는 색채를 사용하되, 가급적 원색지양 ◦ 보조색 : 주조색과 같은 계열의 색
건축선	-		
A	A5-1	지정용도	◦ 건축법시행령[별표1] 제4호 제2종근린생활시설 중 일반음식점
		불허용도	◦ 지정용도 이외의 용도
		건폐율	◦ 40% 이하
		용적률	◦ 80% 이하
		높 이	◦ 2층 이하
		배 치	◦ 건축물의 주방향은 일조, 채광, 통풍 등을 고려하여 가급적 동향 또는 남향으로 배치하고, 불가피한 경우 대지조건에 맞게 배치 ◦ 건축물의 규모, 지형조건 및 주변여건을 고려한 배치로 시각적 개방감 확보
		형 태	◦ 지붕의 형태는 랜드마크, 상징성이 발휘될 수 있도록 계획 ◦ 옥탑구조물은 가급적 설치를 지양하되, 불가피한 경우 가로경관에 영향을 주지 않는 범위내에서 지붕형태와 조화를 이루도록 계획
		색 채	◦ 주조색 : 주변 자연환경과 조화되는 색채를 사용하되, 가급적 원색지양 ◦ 보조색 : 주조색과 같은 계열의 색
건축선	-		

도면번호	위 치	구 분	계획내용
A	A7-1	지정용도	◦ 건축법시행령[별표1] 제21호 동물 및 식물 관련시설 중 온실, 제4호 제2종근린생활시설 중 사무소
		불허용도	◦ 지정용도 이외의 용도
		건폐율	◦ 40% 이하
		용적률	◦ 40% 이하
		높 이	◦ 1층
		배 치	◦ 건축물의 주방향은 일조, 채광, 통풍 등을 고려하여 가급적 동향 또는 남향으로 배치하고, 불가피한 경우 대지조건에 맞게 배치 ◦ 건축물의 규모, 지형조건 및 주변여건을 고려한 배치로 시각적 개방감 확보
		형 태	◦ 지붕의 형태는 랜드마크, 상징성이 발휘될 수 있도록 계획 ◦ 옥탑구조물은 가급적 설치를 지양하되, 불가피한 경우 가로경관에 영향을 주지 않는 범위내에서 지붕형태와 조화를 이루도록 계획
		색 채	◦ 구조색 : 주변 자연환경과 조화되는 색채를 사용하되, 가급적 원색지양 ◦ 보조색 : 구조색과 같은 계열의 색
		건축선	-
A	A9-1	지정용도	◦ 건축법시행령[별표1] 제3호 제1종근린생활시설 중 공중화장실
		불허용도	◦ 지정용도 이외의 용도
		건폐율	◦ 20% 이하
		용적률	◦ 20% 이하
		높 이	◦ 1층
		배 치	◦ 건축물의 주방향은 일조, 채광, 통풍 등을 고려하여 가급적 동향 또는 남향으로 배치하고, 불가피한 경우 대지조건에 맞게 배치 ◦ 건축물의 규모, 지형조건 및 주변여건을 고려한 배치로 시각적 개방감 확보
		형 태	◦ 지붕의 형태는 랜드마크, 상징성이 발휘될 수 있도록 계획 ◦ 옥탑구조물은 가급적 설치를 지양하되, 불가피한 경우 가로경관에 영향을 주지 않는 범위내에서 지붕형태와 조화를 이루도록 계획
		색 채	◦ 구조색 : 주변 자연환경과 조화되는 색채를 사용하되, 가급적 원색지양 ◦ 보조색 : 구조색과 같은 계열의 색
		건축선	-

도면번호	위 치	구 분	계획내용
A	A12-1	지정용도	◦ 건축법시행령[별표1] 제3호 제1종근린생활시설 중 공중화장실
		불허용도	◦ 지정용도 이외의 용도
		건폐율	◦ 20% 이하
		용적률	◦ 20% 이하
		높 이	◦ 1층
		배 치	◦ 건축물의 주방향은 일조, 채광, 통풍 등을 고려하여 가급적 동향 또는 남향으로 배치하고, 불가피한 경우 대지조건에 맞게 배치 ◦ 건축물의 규모, 지형조건 및 주변여건을 고려한 배치로 시각적 개방감 확보
		형 태	◦ 지붕의 형태는 랜드마크, 상징성이 발휘될 수 있도록 계획 ◦ 옥탑구조물은 가급적 설치를 지양하되, 불가피한 경우 가로경관에 영향을 주지 않는 범위내에서 지붕형태와 조화를 이루도록 계획
		색 채	◦ 주조색 : 주변 자연환경과 조화되는 색채를 사용하되, 가급적 원색지양 ◦ 보조색 : 주조색과 같은 계열의 색
		건축선	-
A	A16-1	지정용도	◦ 건축법시행령[별표1] 제4호 제2종근린생활시설 중 사무소, 제18호 창고시설, 제21호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도축장, 도계장 제외)
		불허용도	◦ 지정용도 이외의 용도
		건폐율	◦ 40% 이하
		용적률	◦ 80% 이하
		높 이	◦ 2층 이하
		배 치	◦ 건축물의 주방향은 일조, 채광, 통풍 등을 고려하여 가급적 동향 또는 남향으로 배치하고, 불가피한 경우 대지조건에 맞게 배치 ◦ 건축물의 규모, 지형조건 및 주변여건을 고려한 배치로 시각적 개방감 확보
		형 태	◦ 지붕의 형태는 랜드마크, 상징성이 발휘될 수 있도록 계획 ◦ 옥탑구조물은 가급적 설치를 지양하되, 불가피한 경우 가로경관에 영향을 주지 않는 범위내에서 지붕형태와 조화를 이루도록 계획
		색 채	◦ 주조색 : 주변 자연환경과 조화되는 색채를 사용하되, 가급적 원색지양 ◦ 보조색 : 주조색과 같은 계열의 색
		건축선	-

□ 건축물에 대한 결정(변경) 조서[변경]

도면번호	위 치	구 분	계획내용
A	A1-1 ~ A15-1	지정용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축법시행령[별표1] 제3호 제1종근린생활시설 ◦ 건축법시행령[별표1] 제4호 제2종근린생활시설(같은 호 더목 및 러목은 제외) ◦ 건축법시행령[별표1] 제5호 문화 및 집회시설 ◦ 건축법시행령[별표1] 제18호 창고시설 ◦ 건축법시행령[별표1] 제21호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같은 호 다목 및 라목은 제외) ◦ 건축법시행령[별표1] 제29호 야영장 시설
		불허용도	◦ 지정용도 이외의 용도
		건폐율	◦ 40% 이하
		용적률	◦ 80% 이하
		높 이	◦ 3층 이하
		배 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축물의 주방향은 일조, 채광, 통풍 등을 고려하여 가급적 동향 또는 남향으로 배치하고, 불가피한 경우 대지조건에 맞게 배치 ◦ 건축물의 규모, 지형조건 및 주변여건을 고려한 배치로 시각적 개방감 확보
		형 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붕의 형태는 랜드마크, 상징성이 발휘될 수 있도록 계획 ◦ 옥탑구조물은 가급적 설치를 지양하되, 불가피한 경우 가로경관에 영향을 주지 않는 범위내에서 지붕형태와 조화를 이루도록 계획
		색 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조색 : 주변 자연환경과 조화되는 색채를 사용하되, 가급적 원색지양 ◦ 보조색 : 주조색과 같은 계열의 색
건축선	-		
B	B1-1	지정용도	◦ 주차장법 제2조 제1호 나목의 노외주차장 및 그 부대시설
		불허용도	◦ 지정용도 이외의 용도
		건폐율	◦ 10% 이하
		용적률	◦ 10% 이하
		높 이	◦ 1층
		배 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축물의 주방향은 일조, 채광, 통풍 등을 고려하여 가급적 동향 또는 남향으로 배치하고, 불가피한 경우 대지조건에 맞게 배치 ◦ 건축물의 규모, 지형조건 및 주변여건을 고려한 배치로 시각적 개방감 확보
		형 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붕의 형태는 랜드마크, 상징성이 발휘될 수 있도록 계획 ◦ 옥탑구조물은 가급적 설치를 지양하되, 불가피한 경우 가로경관에 영향을 주지 않는 범위내에서 지붕형태와 조화를 이루도록 계획
		색 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조색 : 주변 자연환경과 조화되는 색채를 사용하되, 가급적 원색지양 ◦ 보조색 : 주조색과 같은 계열의 색
건축선	-		

도면번호	위 치	구 분	계획내용
C	C1-1	지정용도	◦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녹지점용허가가 가능한 시설
		불허용도	◦ 지정용도 이외의 용도
		건폐율	◦ 10% 이하
		용적률	◦ 10% 이하
		높 이	◦ 1층
		배 치	◦ 건축물의 주방향은 일조, 채광, 통풍 등을 고려하여 가급적 동향 또는 남향으로 배치하고, 불가피한 경우 대지조건에 맞게 배치 ◦ 건축물의 규모, 지형조건 및 주변여건을 고려한 배치로 시각적 개방감 확보
		형 태	◦ 지붕의 형태는 랜드마크, 상징성이 발휘될 수 있도록 계획 ◦ 옥탑구조물은 가급적 설치를 지양하되, 불가피한 경우 가로경관에 영향을 주지 않는 범위내에서 지붕형태와 조화를 이루도록 계획
		색 채	◦ 주조색 : 주변 자연환경과 조화되는 색채를 사용하되, 가급적 원색지양 ◦ 보조색 : 주조색과 같은 계열의 색
건축선	-		

장수군 공고 제 2017 - 108호

장수 군계획시설(도로)사업 실시계획 인가 고시

장수 군계획시설(도로)사업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97조 규정에 의거 실시계획을 인가하고, 같은 법 제9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00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7년 10월 16일

장 수 군 수

1. 사업시행지의 위치

- 장수 북동로(소로3-26호/소로3-32호) : 장수읍 장수리 430-5번지 일원
- 장계 남동로(소로3-17호) : 계남면 호덕리 553-5번지 일원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

사업의 종류	명 칭	사업규모	비 고
군계획시설사업(장수)	장수 북동로 개설사업 (소로3-26, 소로3-32)	도로개설 L=367m, B=6~7.5m	
군계획시설사업(장계)	장계 남동로 개설사업 (소로3-17)	도로개설 L=183m, B=6~6.0m	

3. 사업 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성 명 : 장수군수
- 주 소 : 장수군 장수읍 호비로 10

4. 사업의 착수 및 준공 예정일 : 2017.10 ~ 2019.12.30

- #### 5.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소재지 · 지번 · 지목 및 면적, 소유권과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세 및 그 소유자 · 권리자의 성명 · 주소 : 붙임

6. 공공시설 등의 귀속 및 양도에 관한 사항 : 해당없음

□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및 소유권 이외의 권리자 조서

가. 장수 북동로 개설사업(소로3-26,3-32)

일련 번호	소재지	지번 (당초지번)	지목	면적(㎡)		소유자		소유권외의 권리	
				지적	편입	성명	주소	성명	주소
1	장수읍 장수리	430-5 (430-13)	답	1,492	383	김광철	장수군 장수읍 호비로 48-9		
2	장수읍 장수리	434	답	109	109	백재식	장수군 장수읍 호비로 45		
3	장수읍 장수리	433 (433-7)	답	151	151	장수군	장수군 장수읍 호비로10		
4	장수읍 장수리	430-12 (430-14)	답	462	123	박정금	장수군 장수읍 호비로 28		
5	장수읍 장수리	447 (447-4) (447-5)	답	915	171	이재남	전주시 덕진구 인후5길 15		
6	장수읍 장수리	447-3 (447-6)	답	1,430	178	이재남	전주시 덕진구 인후5길 15		
7	장수읍 장수리	448-4 (448-9)	답	752	111	권대승	서울시 중랑구 용마산로 36길 15-8 102호(공간행복)		
8	장수읍 장수리	449-1 (449-14)	답	1,630	303	김재순	장수군 천천면 옥자동길 187-3		
9	장수읍 장수리	462-6 (462-9)	대	286	49	우태근	고양시 일산동구 숲속마을 2로 142,101호(풍동)		
10	장수읍 장수리	462-7 (462-10)	답	5	1	곽한진	전주시 덕진구 무삼지로 10 603동 901호		
11	장수읍 장수리	445 (445-3) (445-5)	답	2,083	214	박호정	철안시 동남구 일봉로 34, 101동 403호(두레현대아파트 1단지)		
12	장수읍 장수리	449-6 (449-16)	대	674	41	중앙선거 관리위원회			
13	장수읍 장수리	437-2 (437-3)	답	1,833	345	김미라	서울시 관악구 행운동 봉천우성 APT 104동 2009호		
14	장수읍 장수리	439-5 (439-10)	답	2,332	16	김해운	장수군 장수읍 노하2길 8-7		
15	장수읍 장수리	439-6 (439-11)	답	263	142	김해운	장수군 장수읍 노하2길 8-7		

나. 장계 남동로 개설사업(소로3-17)

일련 번호	소재지	지번 (당초지번)	지목	면적(㎡)		소 유 자		소유권외의 권리	
				지적	편입	성명	주 소	성명	주 소
1	장계면 장계리	433-1	대	155	155	오창민	서울시 양천구 신정도 337 목동2차APT 203-706		
2	장계면 장계리	433-6	대	123	123	오창민	서울시 양천구 신정도 337 목동2차APT 203-706		
3	장계면 장계리	436-5 (436-4)	대	211	5	김영환	경기도 안산시 와동 808-9		
4	장계면 장계리	477-9 (477-1)	대	566	190	장수군	장수읍 장수읍 호비로 10		
5	장계면 장계리	478-4 (478)	대	562	1	김순태	장수군 장계면 장계1길 18		
6	장계면 장계리	478-5 (478-2)	도	69	6	김영훈	장수군 장계면 장계1길 18		
7	계남면 호덕리	553-5 (553-1)	답	3,539	585	장수군	장수읍 장수읍 호비로 10		
8	계남면 호덕리	553-7 (553-2)	도	165	38	오중권	장계면 장계리 433-1		

장수군 공고 제 2017 - 797호

수분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보상계획 열람공고

장수군에서 시행하는 「장수군 수분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에 편입되는 토지 및 물건에 대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보상계획을 공고하니 토지 및 물건 등의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토지 및 물건조서 등을 열람하시고 조서내용에 이의가 있으신 경우 열람기간 내에 이의신청서를 제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7년 9월 29일

장 수 군 수

1. 사업의 개요

- 가. 사업명: 수분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 나. 위 치: 장수군 장수읍 수분리 일원
- 다. 사업규모: 축제및호안정비 L=1.39km, 교량재가설 5개소, 보 및 낙차공 14개소
- 라. 사업시행자: 장수군청

2. 보상대상

- 가. 대상 : 토지 및 물건(붙임 조서 참조)

3. 열람 및 이의신청

- 가. 열람(이의신청)기간: 2017. 9. 30. ~ 2017. 9. 15.(16일간)
- 나. 열람장소: 장수군청 안전재난과 재해대책팀(☎ 063-350-2269)
- 다. 이의신청 장소 및 방법: 열람기간 내 장수군청 안전재난과 재해대책팀에 서면으로 제출

4. 보상금 협의 및 지급시기: 손실보상협의 통지일 ~ 사업완료시까지

- 가. 열람기간 만료 후 보상협의 개별통지 할 것이나, 미수령자에 대하여는 본 공고로 같음하며, 보상금 지급은 협의계약 체결 후 토지 등을 장수군으로 소유권 이전등기 후 보상금을 지급 합니다.

5. 보상방법 및 절차

- 가. 보상산정방법: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6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 규정에 의거 3인(시·도지사 및 토지소유자가 모두 감정평가업자를 추천하지 아니하거나 시·도지사 또는 토지소유자 어느 한쪽이 감정평가업자를 추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2인)의 감정평가업자가 평가한 감정 평가

금액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협의에 의한 계약을 체결하되, 협의가 성립하지 아니하거나 협의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

나. 보상시기는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토지·물건별 보상금액 및 구비서류 등은 손실 보상 협의요청과 함께 개별 통지할 계획입니다.

다. 보상절차: 보상계획 공고 및 열람 ⇒ 감정평가 및 보상액 산정 ⇒ 손실 보상 협의 및 보상지급 ⇒ 수용재결(보상협의 불성립 시) ⇒ 공탁 및 수용
라. 감정평가업자 추천방법: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

68조제2항에 의거 감정평가업자 1인을 추천하고자 하는 때에는 보상대상 토지 면적의 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소유자와 보상대상 토지의 토지소유자 총수의 과반수의 동의를 받은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열람 기간 만료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장수군 안전재난과 재해대책팀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제출하는 서류의 모든 반드시 소유자 본인이 자필로 서명하고 인감도장을 날인하여야 하며 대리인 서명은 불가합니다. 소유자가 사망이나 거소불명에 따른 상속인은 제적등본 등 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6. 기타사항

가. 토지조서 및 물건조서는 장수군청 안전재난과에 비치하고 있습니다.

나. 보상시기는 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보상계획 및 열람 안내문을 소유자 및 관계인 등에게 개별통지하고 주소나 거소불명으로 통지를 못한 분에 대하여는 이 공고로 대신하오니 상기 열람 장소에서 토지 및 물건조서 내역을 확인하시기 바라며, 개인별 보상액, 협의기간, 구비서류 등 손실 보상 및 계약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추후 개별 통지합니다.

다. 사업계획의 변경 등의 사유로 보상대상 토지 및 물건의 편입면적(수량)이 변동 될 수 있습니다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장수군청 안전재난과 재해대책팀(☎ 063-350-2269)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이 의 신 청 서

1. 제 목	수분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보상계획 열람공고	
2. 당사자	성 명(명칭)	
	주 소	
3. 의 견		
4. 기 타		
<p>『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p> <p style="text-align: right;">2017. 10 . .</p> <p>의견 제출인 주 소 : 성 명 : (서명 또는 인) 전화번호 :</p> <p>장 수 군 수 귀하</p>		
비 고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편입용지 집계표

소재지 : 장수군 장수읍 수분리 일원

구분	계		국유지		사유지		비고
	필지	면적(m ²)	필지	면적(m ²)	필지	면적(m ²)	
전	2	76	-	-	2	76	
답	32	3,122	2	31	30	3,091	
대	8	276	1	40	7	236	
임	6	549	5	527	1	22	
잡	-	-	-	-	-	-	
유	-	-	-	-	-	-	
묘	-	-	-	-	-	-	
구	2	21	2	21	-	-	
도	7	1,345	7	1,345	-	-	
제	-	-	-	-	-	-	
천	3	7,489	3	7,489	-	-	
과	-	-	-	-	-	-	
수	-	-	-	-	-	-	
목	-	-	-	-	-	-	
광	-	-	-	-	-	-	
염	-	-	-	-	-	-	
공	-	-	-	-	-	-	
학	-	-	-	-	-	-	
가	1	3	1	3	-	-	
계	61	12,881	21	9,456	40	3,425	

※ 기타사항 : 0-12(가상지목)은 등기부등본 및 토지대장상 누락되어 있음.

편입토지세목조서

일련번호	소재지			지목	지적 (㎡)	편입지적 (㎡)	소유자		비고
	읍면	리동	지번				주소	성명	
계			61필지		81,235	12,881			
1	장수	수분	625	답	545	1	전라북도 장수군 장수읍 뜯봉생길 63	이연옥	
2	장수	수분	544-1	임	22	22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원미동 172-4	김순요	
3	장수	수분	547-1	답	31	19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심곡동 190-1-201	김순요	
4	장수	수분	970-6	천	7,497	3,956	국	국토교통부	
5	장수	수분	548	대	579	89	인천광역시 부평구 장계로 159번길 48-5, a동 401호(부평동, 부광그린	김정기	
6	장수	수분	976-2	도	4,131	456	국	국토해양부	
7	장수	수분	566	대	502	12	김해시 구산동 1052-3 구지마을동원 아파트 103-705	김성기	
8	장수	수분	601	대	317	6	601	김인기	
9	장수	수분	600-1	대	25	4	601	김인기	
10	장수	수분	600	대	858	83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은행동 2233-1 금성빌라-302	이순금	
11	장수	수분	599	대	208	40	고양시 덕양구 화정동 1135 옥빛마을 1706-202	김영진 외 3인	
12	장수	수분	597-1	답	450	134	전주시 덕진구 인후동 1가 147-4	김성열	
13	장수	수분	596-1	전	159	37	전라북도 장수군 장수읍 물뿌랭이길 18-3	김중환	
14	장수	수분	454	답	2,314	186	서울 서초구 서초동 1685 삼풍아파트 14-1506	도중락	
15	장수	수분	1066	도	713	23	국	국(농림축산식품부)	
16	장수	수분	1061	구	2,213	19	국	국(농림축산식품부)	
17	장수	수분	1030	답	1,118	143	번암면 교동리 362	도용락	
18	장수	수분	1029	답	1,694	69	603	정금자	
19	장수	수분	1028	답	2,157	84	603	정금자	
20	장수	수분	1027	답	1,980	97	전라북도 장수군 장수읍 신천로 63, 301호(신천아파트)	서광석	
21	장수	수분	1026	답	2,046	104	전라북도 장수군 장수읍 물뿌랭이길 16	김인기	
22	장수	수분	1025	답	632	35	565	황해권	
23	장수	수분	1024	답	1,367	72	565	황해권	
24	장수	수분	1071	천	3,874	3,372	국	국토교통부	
25	장수	수분	1023	답	2,011	101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중화산동2가 35-19	박춘남	
26	장수	수분	1022	답	888	2	충청북도 청주시 상당구 1순환로 318번길 10, 203호(내막동)	박계용	
27	장수	수분	1040	답	1,444	9	전라북도 장수군 장수읍 장수리 304-2 와남빌라 가동 302	박현숙	
28	장수	수분	1039	답	1,969	75	전라북도 장수군 장수읍 장수리 304-2 와남빌라 가동 302	박현숙	
29	장수	수분	1067	도	2,786	729	국	농림축산식품부	

30	장수	수분	1038	답	1,360	42	전라북도 장수군 장수읍 장수리 304-2 와남빌라 가동 302	박현숙 외 2인	
31	장수	수분	1037	답	562	19	전라북도 장수군 장수읍 장수리 304-2 와남빌라 가동 302	박현숙 외 2인	
32	장수	수분	1036	답	1,960	50	변암면 교동리 1340	서병남 외 3인	
33	장수	수분	1035	답	1,922	38	서울특별시 관악구 관천로15길 123, 201호(신림동, 에이스맨션)	정옥분	
34	장수	수분	1034	답	1,967	34	서울특별시 관악구 관천로15길 123, 201호(신림동, 에이스맨션)	정옥분	
35	장수	수분	1033	답	1,913	9	남원군 상동면 대상리 271	고광서 외 1인	
36	장수	수분	453	답	1,035	245	683-1	이동근	
37	장수	수분	689-1	답	2,188	444	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거북바우로 91(인후동2가)	김정수 외 1인	
38	장수	수분	689-2	답	2,380	662	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거북바우로 91(인후동2가)	김정수 외 1인	
39	장수	수분	977	도	528	65	국	국토해양부	
40	장수	수분	687-1	답	2,493	145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서원로 386, 104동 906호(중화산동1가, 신일아파트)	허정식	
41	장수	수분	684-1	답	510	60	전북 장수군 장수읍 물뽕랭이길 12	이동근	
42	장수	수분	684-4	도	383	34		장수군	
43	장수	수분	684-2	도	112	9		장수군	
44	장수	수분	684-3	답	83	11		장수군	
45	장수	수분	683-1	대	434	2	683-1	이동근	
46	장수	수분	607-1	답	99	4	575	김기태	
47	장수	수분	606-1	답	46	9	수분리	박인화	
48	장수	수분	0-12	가	54	3			토지대장 누락
49	장수	수분	979	구	2,070	2	국	농림축산식품부	
50	장수	수분	618	임	93	17		장수군	
51	장수	수분	622-1	임	54	48	국	산림청	
52	장수	수분	622	임	2,310	70	국	산림청	
53	장수	수분	623	대	60	40		장수군	
54	장수	수분	624	답	69	7	전라북도 장수군 장수읍 수분리 612	이상근	
55	장수	수분	625-1	답	20	20		장수군	
56	장수	수분	625	답	545	192	전라북도 장수군 장수읍 뜰봉샘길 63	이연옥	
57	장수	수분	483-1	전	4,585	39	산57-1	임창순	
58	장수	수분	산57-9	임	1,434	296	국	건설부	
59	장수	수분	산57-8	임	277	96	국	건설부	
60	장수	수분	970-9	천	3,805	161	국	국토교통부	
61	장수	수분	1062	도	1,354	29	국	농림축산식품부	

장수군 공고 제 2017 - 798호

원흥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보상계획 열람공고

장수군에서 시행하는 「장수군 원흥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에 편입되는 토지 및 물건에 대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보상계획을 공고하니 토지 및 물건 등의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토지 및 물건조서 등을 열람하시고 조서내용에 이의가 있으신 경우 열람기간 내에 이의신청서를 제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7년 9월 29일

장 수 군 수

1. 사업의 개요

- 가. 사업명: 원흥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 나. 위 치: 장수군 산서면 마하리 일원
- 다. 사업규모: 축제및호안정비 L=1.4km, 교량재가설 4개소, 보 및 낙차공 15개소
- 라. 사업시행자: 장수군청

2. 보상대상

- 가. 대상 : 토지 및 물건(붙임 조서 참조)

3. 열람 및 이의신청

- 가. 열람(이의신청)기간: 2017. 9. 30. ~ 2017. 9. 15.(16일간)
- 나. 열람장소: 장수군청 안전재난과 재해대책팀(☎ 063-350-2269)
- 다. 이의신청 장소 및 방법: 열람기간 내 장수군청 안전재난과 재해대책팀에 서면으로 제출

4. 보상금 협의 및 지급시기: 손실보상협의 통지일 ~ 사업완료시까지

- 가. 열람기간 만료 후 보상협의 개별통지 할 것이나, 미수령자에 대하여는 본 공고로 갈음하며, 보상금 지급은 협의계약 체결 후 토지 등을 장수군으로 소유권 이전등기 후 보상금을 지급 합니다.

5. 보상방법 및 절차

- 가. 보상산정방법: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6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 규정에 의거 3인(시·도지사과 토지소유자가 모두 감정평가업자를 추천하지 아니하거나 시·도지사 또는 토지소유자 어느 한쪽이 감정평가업자를 추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2인)의 감정평가업자가 평가한 감정 평가

금액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협의에 의한 계약을 체결하되, 협의가 성립하지 아니하거나 협의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

나. 보상시기는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토지·물건별 보상금액 및 구비서류 등은 손실보상 협의요청과 함께 개별 통지할 계획입니다.

다. 보상절차: 보상계획 공고 및 열람 ⇒ 감정평가 및 보상액 산정 ⇒ 손실 보상 협의 및 보상지급 ⇒ 수용재결(보상협의 불성립 시) ⇒ 공탁 및 수용
 라. 감정평가업자 추천방법: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68조제2항에 의거 감정평가업자 1인을 추천하고자 하는 때에는 보상대상 토지 면적의 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소유자와 보상대상 토지의 토지소유자 총수의 과반수의 동의를 받은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열람기간 만료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장수군 안전재난과 재해대책팀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제출하는 서류의 모든 반드시 소유자 본인이 자필로 서명하고 인감도장을 날인하여야 하며 대리인 서명은 불가합니다. 소유자가 사망이나 거소불명에 따른 상속인은 제적등본 등 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6. 기타사항

가. 토지조서 및 물건조서는 장수군청 안전재난과에 비치하고 있습니다.

나. 보상시기는 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보상계획 및 열람 안내문 등을 소유자 및 관계인 등에게 개별통지하고 주소나 거소불명으로 통지를 못한 분에 대하여는 이 공고로 대신하오니 상기 열람 장소에서 토지 및 물건조서 내역을 확인하시기 바라며, 개인별 보상액, 협의기간, 구비서류 등 손실 보상 및 계약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추후 개별 통지합니다.

다. 사업계획의 변경 등의 사유로 보상대상 토지 및 물건의 편입면적(수량)이 변동 될 수 있습니다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장수군청 안전재난과 재해대책팀(☎ 063-350-2269)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이 의 신 청 서

1. 제 목	원흥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보상계획 열람공고	
2. 당사자	성 명(명칭)	
	주 소	
3. 의 견		
4. 기 타		
<p>『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p> <p style="text-align: right;">2017. 10 . .</p> <p>의견 제출인 주 소 : 성 명 : (서명 또는 인) 전화번호 :</p> <p>장 수 군 수 귀하</p>		
비 고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편입용지 집계표(원흥 재해위험개선지구)

지 목	합 계				국 유 지				사 유 지			
	필 지	지 적	편입면적	잔여면적	필 지	지 적	편입면적	잔여면적	필 지	지 적	편입면적	잔여면적
구거												
담												
대지												
도로												
묘지												
유지												
임야												
잡종지												
전												
종교												
제방												
창고												
주유소												
하천												
계												

용지조서(원흥 재해위험개선지구)

번호	토지소재지				지목	지적 (㎡)	편입면적 (㎡)	잔여면적 (㎡)	공시지가 (원/㎡)	토지대장		등기부등본		비고
	도	시·군	읍·면	동·리						지번	성명	주소	성명	
1	전북	장수	산서	마하	795	도	806	144	662			국	국토해양부	
2	전북	장수	산서	마하	1120	구	3,046	156	2,890			국	농림축산 식품부	
3	전북	장수	산서	마하	110	답	165	165	-	4,670		육지수	장수군 산서면 마하리 193	
4	전북	장수	산서	마하	796	도	129	129	-			국	국토해양부	
5	전북	장수	산서	마하	111	답	301	31	270			이기동	장수군 산서면 마하리 286	
6	전북	장수	산서	마하	783-50	천	27,325	6,323	21,002			국	국토교통부	
7	전북	장수	산서	마하	112	답	1,228	623	605			육석수	장수군 산서면 마하리 113	
8	전북	장수	산서	마하	797	도	469	51	418			국	국토해양부	
9	전북	장수	산서	마하	115	대	284	13	271		양문국	이룡리		
10	전북	장수	산서	마하	산35-4	임	13,686	14	13,672			육근생	장수군 산서면 마하리 125	
11	전북	장수	산서	마하	802	도	584	22	562			국	국토해양부	
12	전북	장수	산서	마하	113-1	묘	1,121	10	1,111		육병원	마하리		
13	전북	장수	산서	마하	798	도	2,427	990	1,437			국	국토해양부	
14	전북	장수	산서	마하	231-2	도	33	4	29			김택성기	장수군 산서면 마하리 201	
15	전북	장수	산서	마하	231-1	답	493	33	460			육필수	장수군 산서면 마하리 181	
16	전북	장수	산서	마하	181-1	대	340	12	328			육필수	장수군 산서면 마하리 181	
17	전북	장수	산서	마하	230	전	129	47	82		육기술	장수군 산서면 마하리 181		
18	전북	장수	산서	마하	229	대	212	49	163			육필수	장수군 산서면 마하리 181	
19	전북	장수	산서	마하	185-1	대	288	61	227			박홍두	장수군 산서면 마하리 198	
20	전북	장수	산서	마하	185-2	도	10	10	-		강홍용	마하리		
21	전북	장수	산서	마하	185-3	도	17	2	15		강기용	마하리		
22	전북	장수	산서	마하	194-2	도	3	3	-			육옥룡	장수군 산서면 마하리 194	
23	전북	장수	산서	마하	194-1	대	317	5	312			육근종외2인	경기도 평택시 신장동 187-21	
24	전북	장수	산서	마하	195-1	대	410	57	353			육윤기	장수군 산서면 마하리 194	
25	전북	장수	산서	마하	195-2	도	10	10	-			육종길	장수군 산서면 마하리 198	
26	전북	장수	산서	마하	1092-5	도	8,214	81	8,133			국	농림축산 식품부	
27	전북	장수	산서	마하	220	답	33	28	5		육병택	마하리		
28	전북	장수	산서	마하	199-2	도	3	1	2		육병대	마하리		
29	전북	장수	산서	마하	217	답	428	428	-			육심천외3인	장수군 산서면 마하리 200-1	
30	전북	장수	산서	마하	200-1	대	122	28	94			육심천	전북 장수군 산서면 월흥길 11-14	
31	전북	장수	산서	마하	200-2	도	40	30	10		강주문	마하리		
32	전북	장수	산서	마하	200-3	도	30	8	22		강주문	마하리		
33	전북	장수	산서	마하	215-3	도	13	2	11			육이동	장수군 산서면 마하리 203	
34	전북	장수	산서	마하	215-1	대	477	37	440	12,700		이삼례	전북 장수군 산서면 월흥길 11-6	
35	전북	장수	산서	마하	215-2	도	13	13	-			육이동	장수군 산서면 마하리 203	
36	전북	장수	산서	마하	1050	답	1,778	170	1,608	7,900		한국농어촌공사	전라남도 나주시 그린로 20	
37	전북	장수	산서	마하	215-4	대	290	33	257			한봉임	장수군 산서면 월흥길 11-8	
38	전북	장수	산서	마하	268	대	231	19	212			육일수	장수군 산서면 마하리 197	
39	전북	장수	산서	마하	1049	답	1,714	154	1,560			한국농어촌공사	전라남도 나주시 그린로 20	
40	전북	장수	산서	마하	783-49	천	50	16	34			국	국토교통부	
41	전북	장수	산서	마하	783-48	천	110	110	-			국	국토교통부	
42	전북	장수	산서	마하	1048	답	1,661	134	1,527			육근선		

번호	토지소재지					지목	지적 (㎡)	편입면적 (㎡)	잔여면적 (㎡)	공시지가 (원/㎡)	토지대장		등기부등본		비고
	도	시·군	읍·면	동·리	지번						성명	주소	성명	주소	
43	전북	장수	산서	마하	1047	답	1,646	95	1,551			육근선	전주시 진북2동 1022-13		
44	전북	장수	산서	마하	1046	답	1,201	121	1,080			육근선	전주시 진북2동 1022-13		
45	전북	장수	산서	마하	1045	답	1,585	198	1,387			육근선	전주시 진북2동 1022-13		
46	전북	장수	산서	마하	1044	답	1,478	186	1,292			육일수	장수군 산서면 마하리 197		
47	전북	장수	산서	마하	1043	답	630	75	555			육영수외1인	장수군 산서면 마하리 194		
48	전북	장수	산서	마하	1042	답	658	73	585			육영수외1인	장수군 산서면 마하리 194		
49	전북	장수	산서	마하	1097-3	도	6,834	5,665	1,169			국	농림축산 식품부		
50	전북	장수	산서	마하	1041	답	1,217	161	1,056			육원순	전주시 원산구 평화동1가 445-6 평화수경아파트 103동 808호		
51	전북	장수	산서	마하	1026	답	1,838	8	1,830			김용호	장수군 산서면 마하리 477-1		
52	전북	장수	산서	마하	1040	답	1,371	345	1,026			육일수	장수군 산서면 마하리 582		
53	전북	장수	산서	마하	1025	답	853	10	843			김용호	장수군 산서면 마하리 477-1		
54	전북	장수	산서	마하	1024	답	978	14	964			육심석	장수군 산서면 마하리 125		
55	전북	장수	산서	마하	1023	답	1,596	25	1,571			육심석	장수군 산서면 마하리 125		
56	전북	장수	산서	마하	1039	답	1,386	390	996			육일수	장수군 산서면 마하리 582		
57	전북	장수	산서	마하	1022	답	1,354	100	1,254			육동수	장수군 산서면 마하리 204		
58	전북	장수	산서	마하	1117	구	868	17	851			국	농림축산 식품부		
59	전북	장수	산서	마하	1038	답	1,050	233	817			육관수	장수군 산서면 오성리 648		
60	전북	장수	산서	마하	1021	답	968	62	906			육동수	장수군 산서면 마하리 204		
61	전북	장수	산서	마하	1116	도	772	27	745			국	농림축산 식품부		
62	전북	장수	산서	마하	1037	답	1,523	234	1,289			김용두	전주시 인후동 2가 46		
63	전북	장수	산서	마하	966	답	685	7	678			육동수	장수군 산서면 마하리 204		
64	전북	장수	산서	마하	965	답	1,116	13	1,103			육원옥·장미·김파용중	장수군 산서면 마하리 215		
65	전북	장수	산서	마하	1036	답	1,452	245	1,207			김용두	전주시 인후동 2가 46		
66	전북	장수	산서	마하	964	답	1,820	26	1,794			육원옥·장미·김파용중	장수군 산서면 마하리 215		
67	전북	장수	산서	마하	963	답	1,929	27	1,902			육상빈외2인	장수군 산서면 마하리 191-1		
68	전북	장수	산서	마하	1035	답	1,094	225	869			김용두	전주시 인후동 2가 46		
69	전북	장수	산서	마하	962	답	917	9	908			육영기	장수군 산서면 마하리 119		
70	전북	장수	산서	마하	1123	구	285	60	225			국	농림축산 식품부		
71	전북	장수	산서	마하	961	답	970	11	959			육종순	장수군 산서면 마하리 205		
72	전북	장수	산서	마하	941	답	927	138	789			국	전라북도		
73	전북	장수	산서	마하	960	답	1,923	23	1,900			육종희	장수군 산서면 마하리 177-1		
74	전북	장수	산서	마하	940	답	862	117	745			이창수	장수군 산서면 마하리 724		
75	전북	장수	산서	마하	959	답	1,876	24	1,852			육동수	장수군 산서면 마하리 204		
76	전북	장수	산서	마하	939	답	1,449	174	1,275			이창수	장수군 산서면 마하리 724		
77	전북	장수	산서	마하	958	답	1,899	13	1,886			국	장수군		
78	전북	장수	산서	마하	938	답	1,031	115	916			이창수	장수군 산서면 마하리 724		
79	전북	장수	산서	마하	937	답	2,395	294	2,101			김용호	장수군 산서면 마하리 477-1		
80	전북	장수	산서	마하	936	답	2,231	234	1,997			김용호	장수군 산서면 마하리 477-1		
81	전북	장수	산서	마하	1096-2	전	12,853	11,965	888			국	국토교통부		
82	전북	장수	산서	마하	935	답	2,163	174	1,989			홍수표	전북 장수군 산서면 평촌길 27-4		
83	전북	장수	산서	마하	934	답	716	59	657			김문정	경상남도 창원시 진해구 중포로37번길 9 103호(상하합동)		
84	전북	장수	산서	마하	933	답	2,995	168	2,827			김문정	경상남도 창원시 진해구 중포로37번길 9 103호(상하합동)		

번호	토지소재지				지목	지적 (㎡)	편입면적 (㎡)	잔여면적 (㎡)	공시지가 (원/㎡)	토지대장		등기부등본		비고
	도	시·군	읍·면	동·리						지번	성명	주소	성명	
85	전북	장수	산서	마하	932	답	1,369	56	1,313			홍정식	서울특별시 양천구 신정동 276 양천아파트 110-1109	
86	전북	장수	산서	마하	931	답	2,012	87	1,925			이장수	장수군 산서면 마하리 724	
87	전북	장수	산서	마하	930	답	1,531	76	1,455			채용인	전북 장수군 산서면 도평길 1	
88	전북	장수	산서	마하	929	답	1,711	89	1,622			채용인	전북 장수군 산서면 도평길 1	
89	전북	장수	산서	마하	928	답	3,233	210	3,023			최자순	전북 장수군 산서면 도평길 36	
90	전북	장수	산서	마하	927	답	1,021	75	946			김봉순	전북 장수군 산서면 평촌길 27	
91	전북	장수	산서	마하	926	답	2,290	176	2,114			김봉순	전북 장수군 산서면 평촌길 27	
92	전북	장수	산서	마하	1108	구	703	2	701			국	농림축산 식품부	
93	전북	장수	산서	마하	1107	도	436	22	414			국	농림축산 식품부	
94	전북	장수	산서	마하	925	답	2,659	386	2,273			유재준외1인	장수군 산서면 마하리734	
95	전북	장수	산서	마하	915	답	1,052	158	894			홍종문	전북 장수군 산서면 평촌길 19-3	
96	전북	장수	산서	마하	924	답	1,248	160	1,088			유재봉	전북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1가 373 효자유타빌@101-1105	
97	전북	장수	산서	마하	923	답	3,073	247	2,826			김윤호	장수군 산서면 마하리 586	
98	전북	장수	산서	마하	922	답	2,829	182	2,647			유인주	전북 장수군 산서면 마하리 588	
99	전북	장수	산서	마하	1106	구	967	102	865			국	농림축산 식품부	
100	전북	장수	산서	마하	1100	구	9,629	15	9,614			국	농림축산 식품부	
101	전북	장수	산서	마하	917	답	969	25	944			윤동현외1인	장수군 산서면 평촌길 33	
102	전북	장수	산서	마하	910	답	1,761	154	1,607			홍종문	전북 장수군 산서면 평촌길 19-3	
103	전북	장수	산서	마하	916	답	1,936	959	977			홍종문외1인	장수군 산서면 마하리 587	
104	전북	장수	산서	마하	1105	도	737	77	660			국	농림축산 식품부	
105	전북	장수	산서	마하	1104	구	865	74	791			국	농림축산 식품부	
106	전북	장수	산서	마하	897-1	도	106	33	73			국	장수군	
107	전북	장수	산서	마하	896-1	도	73	73	-			국	장수군	
108	전북	장수	산서	마하	1099	도	621	19	602			국	농림축산 식품부	
109	전북	장수	산서	마하	1097-2	도	96	96	-			국	농림축산 식품부	
110	전북	장수	산서	마하	1096-1	전	273	273	-			국	국토교통부	
111	전북	장수	산서	마하	1098-1	도	906	39	867			국	농림축산 식품부	
112	전북	장수	산서	마하	895-1	도	663	23	640			국	장수군	
113	전북	장수	산서	마하	897	답	954	5	949			이봉기	서울특별시 금천구 독산로50길 57-2, 101동909호 (시흥동,금강아파트)	
114	전북	장수	산서	마하	895	답	1,037	65	972			김창호	전주시완산구삼천동1가705 오성아파트105-403	
115	전북	장수	산서	마하	896	답	1,999	951	1,048			유일주	장수군 산서면 마하리 663	
116	전북	장수	산서	마하	894	답	1,641	79	1,562			홍순봉	장수군 산서면 동화리839-51	
117	전북	장수	산서	마하	1097	도	800	571	229			국	농림축산 식품부	
118	전북	장수	산서	마하	1096	전	1,495	1,495	-			국	국토교통부	
119	전북	장수	산서	마하	893	답	1,410	70	1,340			홍철	장수군 산서면 마하리670	
120	전북	장수	산서	마하	1103	구	425	17	408			국	농림축산 식품부	
121	전북	장수	산서	마하	1102	도	692	29	663			국	농림축산 식품부	
122	전북	장수	산서	마하	1101	구	1,462	41	1,421			국	농림축산 식품부	
123	전북	장수	산서	마하	1098	구	275	6	269			국	농림축산 식품부	
124	전북	장수	산서	마하	892	답	1,709	69	1,640			한봉임	장수군 산서면 마하리621	
125	전북	장수	산서	마하	884	답	1,321	151	1,170			옥천옥씨박물관 파용윤종중	전주시 평화동1가434-54	
126	전북	장수	산서	마하	1095	도	451	91	360			국	농림축산 식품부	
127	전북	장수	산서	마하	599-1	답	258	101	157			국	전라북도	
128	전북	장수	산서	마하	783	전	15,939	179	15,760			국	국토교통부	
합계				필지			219,071	40,224	178,847					

장수군 공고 제2017-825호

산림보호구역 지정해제 예정지 공고

『산림보호법시행령』 제6조의2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0조의2 규정에 의거 붙임과 같이 산림보호구역 지정해제 예정지를 공고합니다.

2017. 10. 19.

장 수 군 수

1. 산림보호구역의 지정해제 사유 및 해제 예정지 현황

가. 산림보호법 제11조 제1항 제1호 나목 : 지정목적 상실

위 치			지적 (㎡)	산림보호구역 현황			지정 년월일
읍·면	리	지번		지정면적 (㎡)	해제면적 (㎡)	종류	
합 계		2필	3,769	3,769	3,769		
산서	오성	산22-2	2,579	2,579	2,579	재해방지보호구역	1986.09.22
산서	오성	산22-5	1,190	1,190	1,190	재해방지보호구역	1986.09.22

2. 의견제출 : 공고일로부터 10일간

3. 공고방법 : 장수군청 홈페이지 및 관보

본 공고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산림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은 10일 이내에 붙임과 같이 이의신청서와 구비서류를 작성하여 장수군청 산림녹지과(063-350-2424)로 방문, 우편 및 팩스 등의 방법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우편 : 전라북도 장수군 장수읍 호비로 10 장수군청 산림녹지과
- 팩스 : 063. 350. 2417

붙임 : 1. 산림보호구역 해제 예정지 조서 1부
2. 산림보호구역 해제 이의신청서 1부. 끝.

■ 산림보호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17. 6. 26.>

산림보호구역 지정 해제 이의신청서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발급일	처리기간 20일
신청인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고시된 보호구역 예정지			
산림 면적	m ²		
<input type="checkbox"/> 지정 <input type="checkbox"/> 해제 예정고시일	. . . (제 호)		
이의신청 면적	m ²		

「산림보호법」 제8조제2항 및 제11조제5항과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제3항 및 제10조의2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이의신청을 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시·도지사
지방산림청장 귀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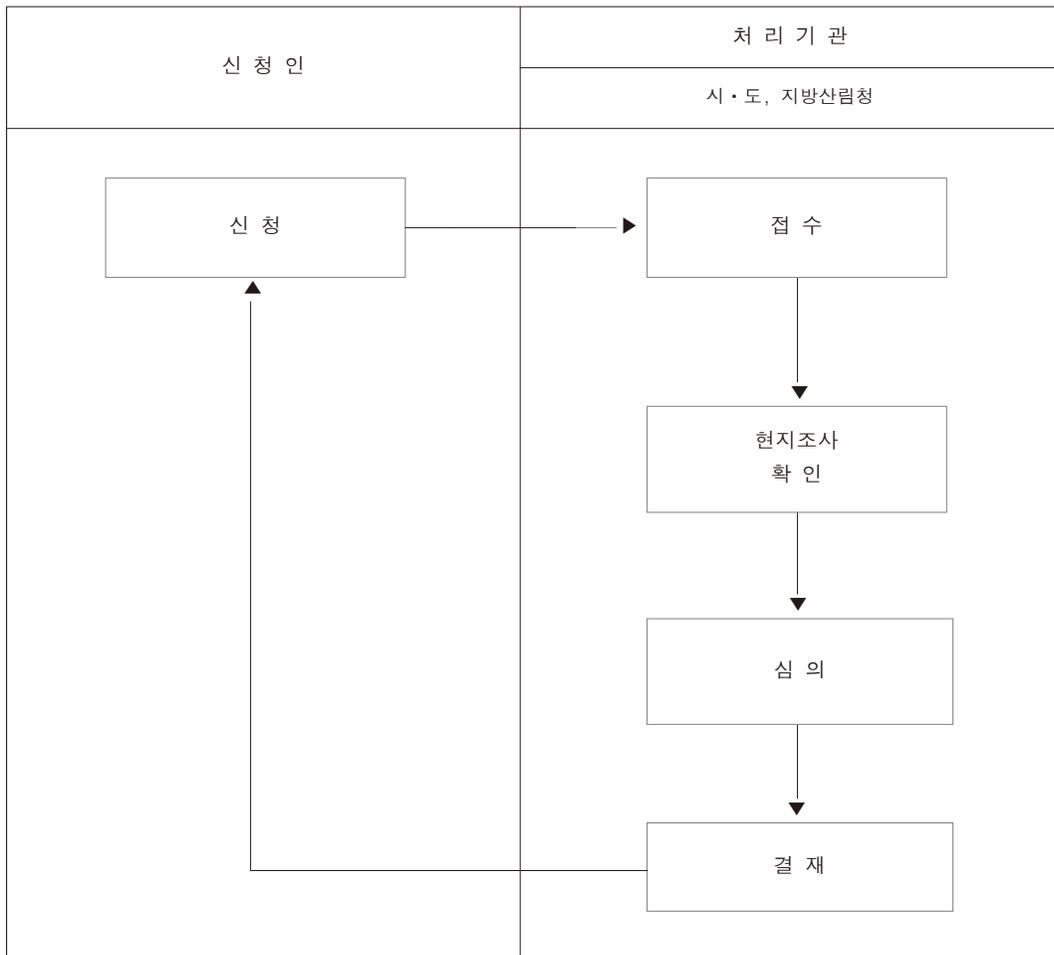
첨부서류	신청 이유서 1부	수수료 없음
------	-----------	-----------

210mm×297mm[백상지 80g/m²(재활용품)]

(뒤쪽)

처리절차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산림보호구역 해제 예정지 필지별 내역										
소재지				지적면적(m ²)	지정면적(m ²)	해제면적(m ²)	지정일자	지정 목적	소유자	비고
시군	읍면	리	지번							
	계		2필지	3,769	3,769	3,769				
장수	산서	오성	산22-2	2,579	2,579	2,579	1986.09.22	재해방지보호구역	김홍철	전주시 완산구 면적1 필 16-5
장수	산서	오성	산22-5	1,190	1,190	1,190	1986.09.22	재해방지보호구역	육관수,김홍철	전주시 완산구 면적1 필 16-5

군보발행안내

◎군보 발행 안내

- 군보는 매월 1일, 15일자로 정기 발행됩니다.(휴일의 경우 익일 발행)
 - ※ 긴급을 요하는 경우 호외 발행
- 군보의 법적 우선효력은 종이군보에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군보는 장수군청 홈페이지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군보게재 의뢰 안내

- 근거법규 : 장수군보발행규정 제9조(게재절차)
- 원고 접수 마감 : 매월 10일, 25일
- 군보게재 의뢰 방법 : 게재의뢰 공문(시행문) 1부 송부